





# 2022 연합학술 다문화포럼 미래사회와 문화다양성



-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14:00 ~ 16:00
- 장소 :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연회장
- 주최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평택대학교 국제교류협력원 /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 행사 일정

사회 : 전민경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이사)

일 정	프로그램
13:30~14:00	<b>접수 및 다과</b>
14:00~14:25	<b>개회</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 회 사 유진이 (평택대학교 교수 / 다문화가족센터 소장)</li><li>● 환 영 사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직무대행)</li><li>● 격 려 사 정장선 (평택시장)</li><li>● 축 사 유의동 (국회의원)</li><li>● 축 사 홍기원 (국회의원)</li><li>● 축하공연 평택다문화대학교 학생 일동</li></ul>
14:25~14:45	<b>기조강연</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 목 미래사회와 다문화</li><li>● 발 표 자 홍영균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회장)</li></ul>
14:45~14:50	<b>휴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내 정리 및 기념 사진 촬영</li></ul>
14:50~15:35	<b>주제발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발 표 1 지역사회를 위한 다문화센터의 미래전략 김영순 (인하대학교 교수 / 다문화융합연구소장)</li><li>● 발 표 2 빅데이터를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전략 송원일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교수)</li><li>● 발 표 3 미래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위한 다문화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이정금 (순천대학교 교수)</li></ul>
15:35~15:55	<b>사례발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 례 1 김재석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li><li>● 사 례 2 김세영 (고양이민자통합센터장)</li><li>● 사 례 3 전정숙 (평택대학교 교수)</li></ul>
15:50~16:00	<b>종합토론 및 질의응답</b>



# 목차

## 개회

개회사 / 유진이 (평택대학교 교수 / 다문화가족센터 소장) .....	i
환영사 /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직무대행) .....	ii
격려사 / 정장선 (평택시장) .....	iv
축사 1 / 유의동 (국회의원) .....	v
축사 2 / 홍기원 (국회의원) .....	vi

## 기조강연

미래사회와 다문화 / 홍영균 ((사)한국청소년시설학회 회장) .....	1
---	---

## 주제발표

지역사회를 위한 다문화센터의 미래전략 김영순 (인하대학교 교수 / 다문화융복합연구소장) .....	21
빅데이터를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전략 송원일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교수) .....	35
미래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위한 다문화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이정금 (순천대학교 교수) .....	47

## 사례발표

사례 1 / 김재석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 .....	61
사례 2 / 김세영 (고양이민자통합센터장) .....	67
사례 3 / 전정숙 (평택대학교 교수) .....	73

## 다문화 자료

다문화 관련법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79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소개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95





## 개 회 사



2006년 9월 국내 최초로 대학교 내에 설립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그동안 다문화인식개선과 다문화교육을 위한  
많은 연구와 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고 자부하지만, 이제 심기일전하여  
미래 대한민국과 다문화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평선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K-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K-다문화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문화 세상을 선도하는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다문화와 세계화,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변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에 국제도시인 평택에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2022 연합학술 다문화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소장  
국제교류협력원 원장  
**유진이** 교수

#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택대학교에서 “미래사회와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연합학술 다문화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다문화포럼에 참여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 유의동 국회의원님, 홍기원 국회의원님, 발표를 맡아주신 홍영균 회장님과 각 교수님, 실무자분들,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성은 모양, 빛깔, 형태, 양식 등이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성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하는 핵심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업에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변화가 빨라진 환경에서 혁신과 유연성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정치적 다양성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의 다양성은 언어, 의상, 전통, 도덕과 종교에 대한 생각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계화로 인해 국경을 초월하여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는 문명을 만들어왔고, 다양성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변화와 성장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미래 인류의 공동가치는 다양성, 창의성, 관용이라고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개인은 물론 학교, 지역사회, 기업 등 모든 조직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이행하는 D&I(Diversity와 Inclusion) 문

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의 실천이 미래사회의 발전 토대가 될 것입니다.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학교 내에 설립된 다문화센터라고 자부합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대안학교,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역사회를 위한 다문화인식개선교육, 다문화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 다문화가족센터가 선도적으로 K-다문화라는 새로운 지평선을 개척하고 우리 대학을 다문화학교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택시가 국제도시로서 갖는 다문화에 대한 이점을 극대화하여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른 것을 포용하는 문화가 자리잡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합학술 다문화포럼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와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다문화가족센터, 국제교류협력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자녀들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평택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이동현**

## 격려사



반갑습니다.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먼저 2022 연합학술 다문화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022 연합학술 다문화포럼을 개최해주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그동안 다문화인식개선과 다문화교육을 위해 많은 연구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평선을 개척하기 위한 오늘 포럼은 K-다문화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다문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합학술 포럼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평택대학교 다문화센터 유진이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포럼을 통하여 평택시가 변화하는 미래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평택시장  
정장선

##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유의동입니다.  
2022 연합학술 다문화포럼 '미래사회와 문화다양성'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문화포럼 개최를 위해 애쓰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거주 이주민의 양적 측면에서는 다문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오늘 연합학술 다문화포럼에서 다문화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한 '2022 연합학술 다문화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회의원  
유의동

## 축 사



미래사회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연합학술 다문화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 준비에 애쓰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소장 유진이 교수님, 연구원 및 발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세계화로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으며,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많은 분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열린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국내 최초로 대학 내에 설립된 다문화가족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다문화사회 연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인식개선에 기여해온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적 차이를 좁혀 우리나라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뜻깊은 포럼을 준비해주신 관계자 및 발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더 넓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회의원  
홍기원

기조강연

# 미래사회와 다문화

홍영균 ((사)한국청소년시설학회 회장)







## 미래사회 & 다문화



1. 사회변화
2. 한국사회
3. 다문화
4. 미래다문화사회

**홍영균**  
(사협)미래환경 이사장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회장

### 시작하며

#### 국내외 현황

- 과학기술 발전 → 4차산업혁명
- 저출산고령화 → 외국인 유입
- 국제정세(전쟁,자원) → 하나의 지구
- 남북한 대치 → 공존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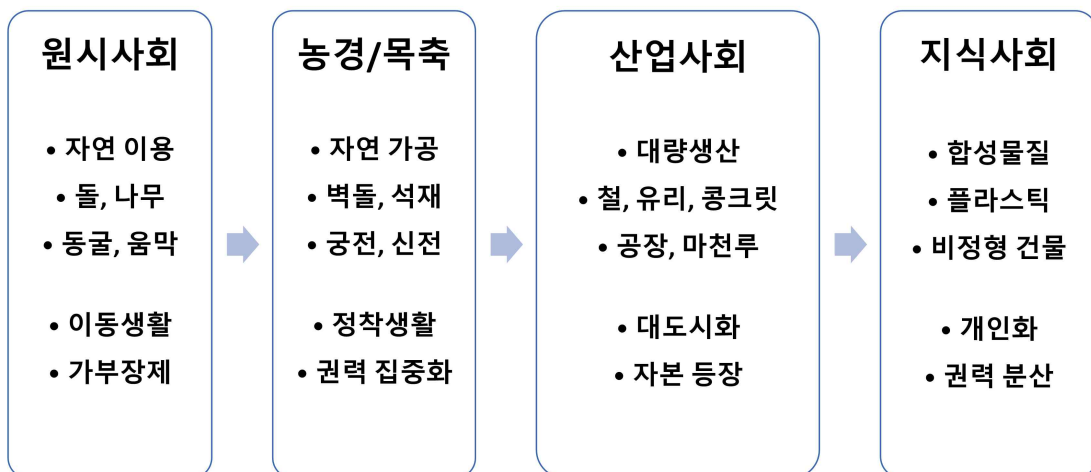


# 1. 사회변화

- 1.1 산업혁명
- 1.2 미래 2000년
- 1.3 미래 2045년
- 1.4 미래 트렌드

## 사회변화의 단계

---



1.1 산업혁명

1차 1784년

증기, 공장생산  
철도

2차 1870년

전기, 대량생산  
자동차

3차 1969년

전자, 무인 공장  
컴퓨터, PC, 스마트폰

4차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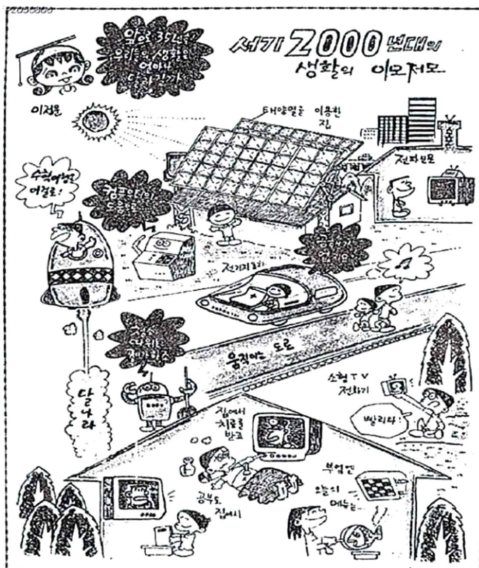
원자, 특이점 시대  
AI + 빅데이터 (2015)

1.2 미래 2000년

(1965년, 국민소득 105달러)

1.3 미래 2045년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04(소득 3.5만불)



소형 TV 전화기, 전기자동차, 태양열 패널, 움직이는 도로, 컴퓨터, TV전자신문, 청소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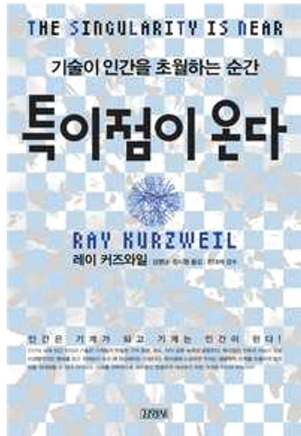
진공관 튜브열차, 평균 수명 120세, 로봇택시, 애완로봇, 빌딩농장

1.3 미래 204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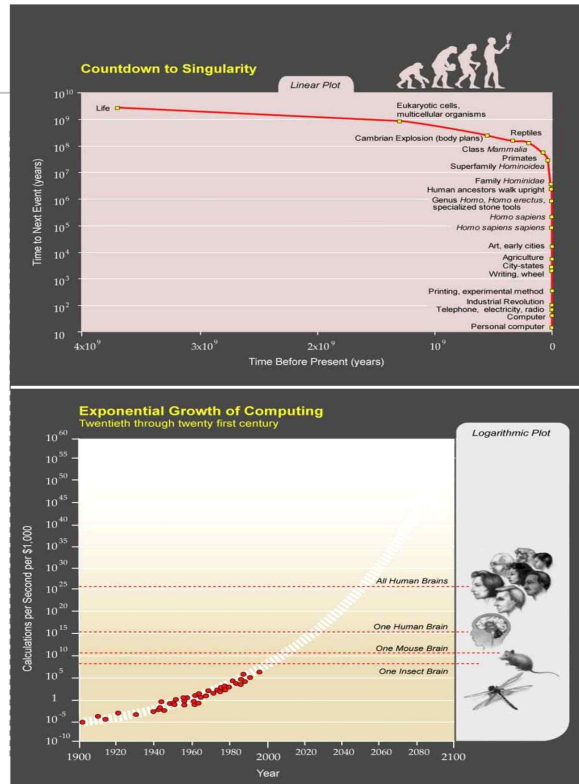
2045년 이후 미래 예측불가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인공지능이 전 인류 지능의 총합마저 크게 앞서는 '특이점' 도래(인간지능 2025년)



원서 : 2005년  
번역 : 2007년



1.4. 미래 트렌드

고령화

고령사회에 맞는 정책, 시설 및 사회시스템 변화  
- 계단 없는 건물, 문턱 없는 바다.  
- 고령사회의 관공서, 아파트, 도로, 빌딩, 공원  
- 독신 고령자용 케어 시설

바이오-나노

인간의 수명연장과 인간능력향상 - 개인의학  
나노의학 - 셀프 클리닝, 디자인 변경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 - 모든 것(사람, 사물, 공간)이 연결된 네트워크화(초연결사회)

기후변화

에너지산업 : 에너지농사 2030년 일상화  
신재생에너지 : 10년 후 미국시장만 750조  
전기차 시장 : 10년 후 10배 이상 성장  
신산업 등장 : 담수화, 리사이클링, 도시농업,  
녹색산업, 해양산업, 수소에너지, 핵융합 등



컴퓨터, 인공지능, 의학, 나노테크놀로지, 에너지, 우주여행, 부 및 인간의 미래

스마트 워크 세상

- 2세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  
가상증강현실 - 교육, 여행, 담화, 일, 여가  
사물인공지능으로 진화

디지털화

칸아카데미 : 현재 2억 3천만 무료 동영상 강좌

edX.org(2012년 5월) : MIT, 하버드, 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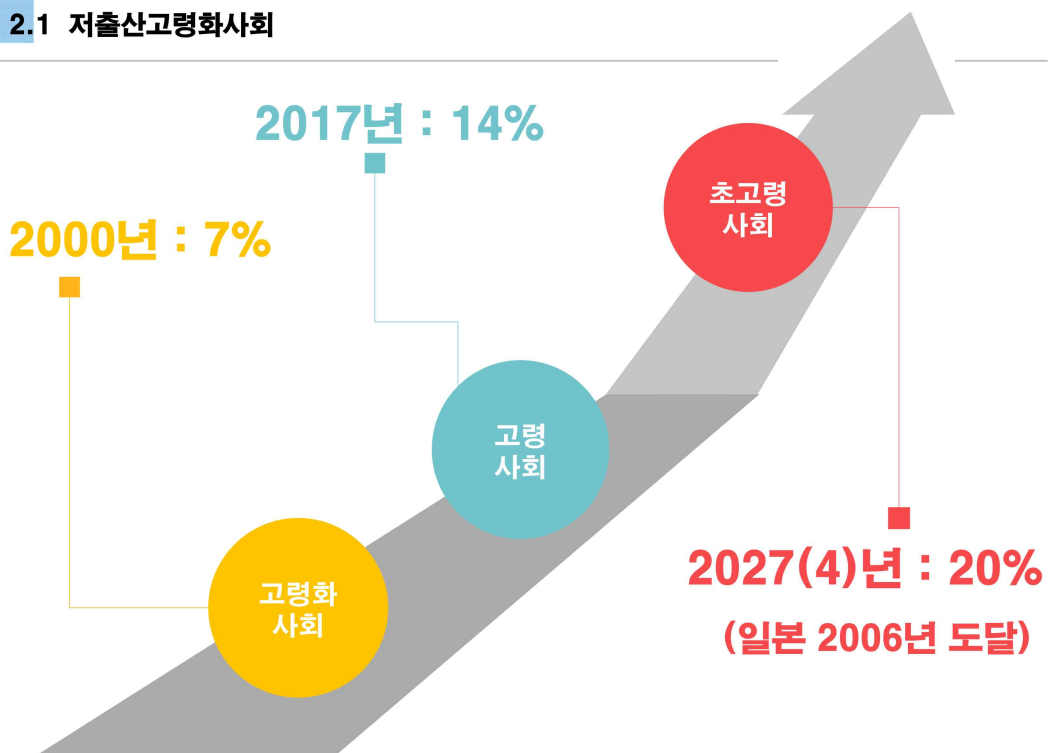
coursera.org : 스탠포드대학 등 40개 대학 **교육혁명**

유튜브의 대중화 및 인터넷 사이버대학 등장

## 2. 한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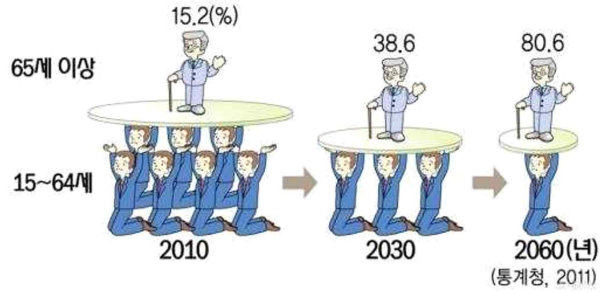
- 2.1 저출산고령화
- 2.2 남북한사회
- 2.3 한국의 교육

### 2.1 저출산고령화사회



**2.1 저출산고령화사회 (노년부양비율)**

필요한 노동이민자 : 2030년 900만명  
2060년 1,500만명



생산 가능 인구(15~64세)와 노년 인구(65세 이상) 변화

**한국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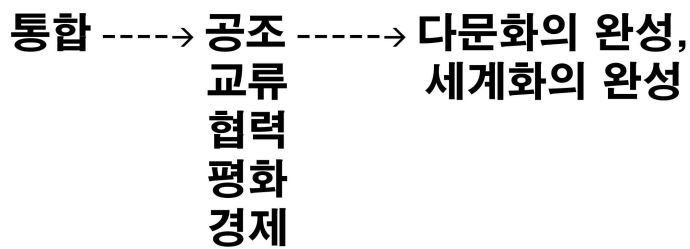


2018년	326,822	6.4	0.977
2019년	302,676	5.9	0.918
2020년	272,337	5.3	0.837
2021년	<b>260,562</b>	5.1	<b>0.808</b>

2.2 남북한사회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 - 고통의 극대화  
국토 분단, 인구 분리, 자원 분리, 국력 소모

미래: 남북한 공조 사회



2.3 한국의 교육



시대별 교육 목표

- 이집트 : 상형문자 해독(읽고 쓰는 능력) - 관료
- 그리스/로마 : 토론하는 방법(논리 및 대화법) - 정치가
- 유럽중세 : 신학 및 과학 연구(하늘과 땅의 법칙) - 지식인
- 현대사회(산업혁명) : 산업인력 양성(경제적 인간) - 자본가/근로자
- 미래(4차혁명) : 지구촌 인재 양성(개인적/공동체적 삶) - 세계시민



지구촌 인재 양성

- 창의적 인재 : '창의성은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 진로교육 : 개인별 재능과 소질을 찾아서 열정을 키우도록 지원
- 취업 또는 창업 : 경제적 여건, 사회문화 변화, 개인적 삶의 방식
- NEET : 2017년 EU국가 20-24세 청년 6명중 1명이 NEET족

### 2.3 한국의 교육

학부모 대담

지금서울교육 웹진(2017.04)

- 1)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이 학교교육의 문제임
- 2) 논술조차도 모범답안이 존재하고, 그것을 평가지표로 삼는 한 다양함은 존중받지 못함
- 3) 아이들도 진로체험은 노는 거라고 생각함. 진로체험방식을 개선해야 함
- 4) 자유학기제나 진로교육을 해도 결국 내신관리 및 수능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는 현실임

### 2.3 한국의 교육

교사 대담

- 1) 지금까지는 산업 4.0를 거론하며 진로교육이나 창업자가 되라고 했다. 고등학교까지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게 교육목표이다.
- 2) 경쟁과 능력 중심의 교육이 아닌 문제를 진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를 발견하는 개척자가 필요하다.
- 3) 선진국은 평가시간에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다른 친구들과 협력을 허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스마트기기에 의한 정보 능력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 4) 기존사회에 대한 적응이 아닌, 행복에 대한 개인적 관점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2.3 한국의 교육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서울교육 Vol.224, 2016 가을호

**기술의 변화**

- 무료 인터넷강좌
- 인공지능 튜터의 이용
- 대학의 존재 방식 변화
- 기존의 표준화 시험 폐지
- **모든 지식을 인간의 뇌에 업로드**  
(인공지능 보다 효율적일까?)

**다양성의 증가**

- **학교아동들 차이 급증**(능력, 학습준비도, 학습방법, 흥미, 장래희망, 문화, 인종 등)
- **다문화 아동 50% 넘는 학교의 등장**
- 향후 교육시스템은 **다양성 대처**임 (헬싱키 디자인 연구소(2011))
- 근본적인 **교육시스템의 재설계가 시급함**

※ 전체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2016) : 경기 안산 A초 81.7%, 서울 영등포 B초 51.9%

2.3 한국의 교육

미래교육의 방향

**배움(학습)마을(Learning Village)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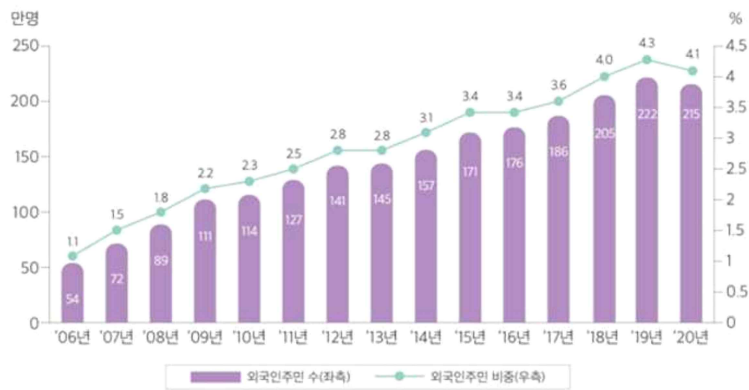
- 근대사회 이전의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된 **무학년제 마을학교**
- 다수의 소규모 학습공동체로 구성되며 **체험(놀이) 학습 중심**
- 학생이 학습을 주도함. 교사의 역할은 **코치와 가이드**임
- 교육과정 구성 : **(최소한) 의무 교과 + 프로젝트 + 자율 교과**
- 중앙정부의 지원 + 지역 당사자 → **공익형 협동(조합) 학교**
- \* **지역 당사자 구성** : 지역 어르신, 학부모, 교사, 지역 선배

## 3. 다문화

- 3.1 다문화 현황
- 3.2 다문화청소년 현황
- 3.3 다문화 지원계획
- 3.4 다문화 방향

### 3.1 다문화 현황

##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행정안전부, 2020)

# 1. 다문화 유형

## 제1 그룹

1. 이주노동자
2. 결혼이민자
3. 탈북 이주자
4. 난민 이주자

## 새로운 그룹

1. 중도입국자녀
2. 한류 방문자

## 기존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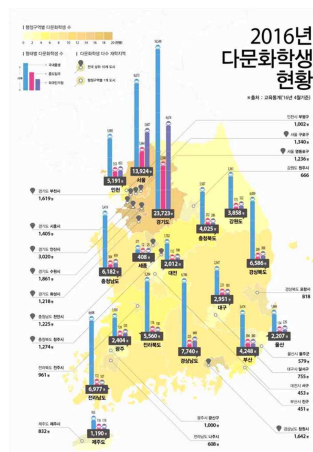
1. 외국인/주한미군
2. 제3국 유학생
3. 재외 교포
4. 입양 교포

### 3.1 다문화 현황(지역별)

#### 2016년 기준

**상위 10대 도시**  
 경기(안산, 수원, 부천, 시흥, 화성)  
 서울(구로, 영등포)  
 경남(창원)  
 충청(천안, 청주)

**1천명 이상**  
 인천 부평  
 광주 광산구  
 전주(961명)  
 제주시(8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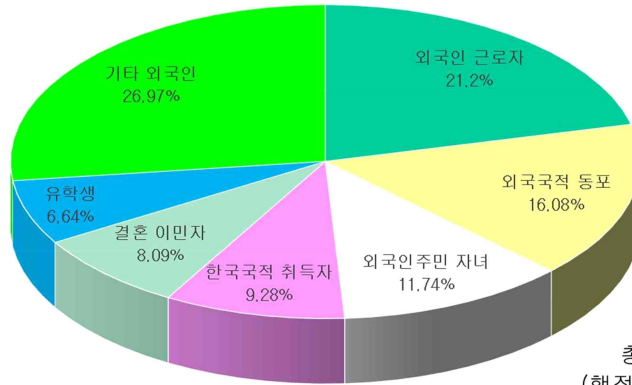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22.08, KESS)

**상위 10대 도시**  
 경기(부천시, 시흥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경남(창원시)  
 충청(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2천 명 이상**  
 서울 구로구  
 경남 김해시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제주 제주시

3.1 다문화 현황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유형



2020년 기준  
총 2,146,748명  
(행정안전부, 2020)

3.1 다문화 현황

다문화가정 현황

연도 ('07~'15)	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연도 ('16~)	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9	359,610	72,312	287,298	173,882	34,628	139,254	185,728	37,684		148,044		
2018	343,797	69,515	274,282	166,882	32,858	134,024	176,915	36,657		140,258		
2017	330,188	65,507	264,681	160,653	30,745	129,908	169,535	34,762		134,773		
2016	318,948	61,544	257,404	159,501	28,728	130,773	159,447	32,816		126,631		
2015	294,663	56,652	238,011	144,912	25,263	119,649	93,249	10,308	82,941	56,502	21,081	35,421
2014	295,842	48,787	247,055	149,764	21,953	127,811	90,439	4,261	86,178	55,639	22,573	33,066
2013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83,929	4,264	79,665	49,775	20,197	29,578
2012	267,727	42,459	225,268	144,214	19,630	124,584	76,473	4,268	72,205	47,040	18,561	28,479
2011	252,764	39,825	212,939	141,654	18,561	123,093	69,804	4,317	65,487	41,306	16,947	24,359
2010	221,548	34,144	187,404	125,087	15,876	109,211	56,584	3,796	52,788	39,877	14,472	25,405
2009	199,398	30,988	168,410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32,308	13,751	18,557
2008	168,224	26,339	141,885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23,839	9,637	14,202
2007	142,015	21,905	120,110	87,964	12,497	75,467	38,991	2,624	36,367	15,060	6,784	8,276

\* '16년부터 귀화요인(혼인 등) 미구분(사유: 기타사유 국적취득의 경우도 대부분 결혼귀화자라 구분 실익이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개정, '11.10.5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자-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19.11월 기준)

3.1 다문화 현황

거주기간별 어려운 점 (중복응답 가능, 단위 : %)

	외로움	양육/ 교육	관공서 이용	경제 곤란	언어 문제	문화 차이	편견/ 차별	문제 없음
2년 미만	39.4	13.4	21.0	16.0	71.9	39.2	9.9	7.4
2~5년	22.2	21.2	12.0	17.3	54.8	32.2	12.0	14.7
5~10년	19.1	26.6	6.6	27.0	31.8	22.2	16.3	22.0
10~15년	16.7	20.9	4.7	35.5	15.6	13.8	16.1	29.8
15년 이상	15.0	17.5	4.3	37.0	10.6	12.0	13.7	36.1

3.2 다문화청소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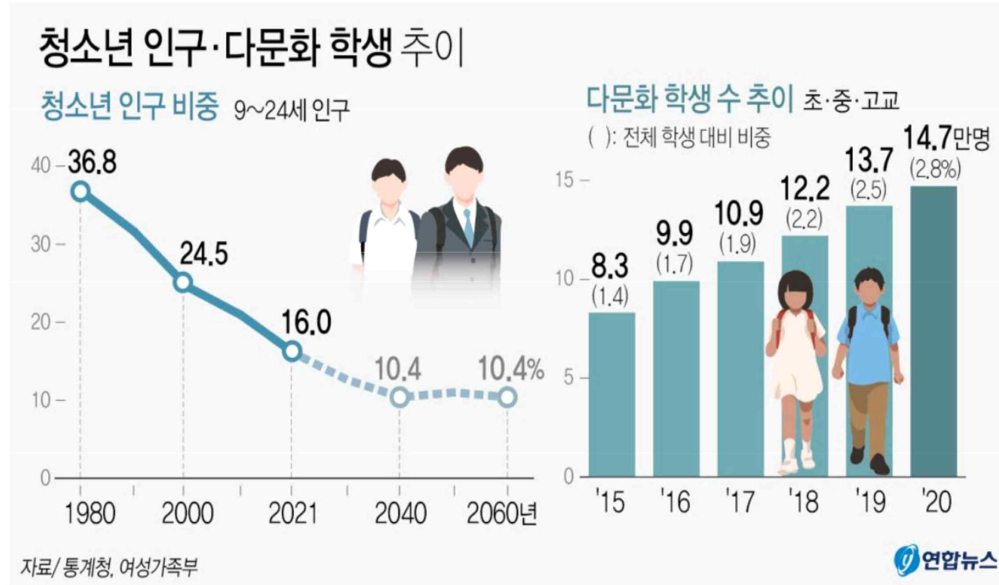
구분	외국인 주민자녀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인원	207,693명	32,000명(추정치) (82,476명)	3,436명
근거	행정자치부 (2015. 1월) (6~18세)	여성가족부(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9~24세)	통일부 (2016, 6월) (10~19세)

현황(총괄) (무지개청소년센터 홈페이지)

구분	외국인 주민자녀	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인원	275,990명	127,849명	1,994명
근거	행정안전부 (2020.11) (0~18세)	여성가족부(2021)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9~24세)	통일부 (2021.12) (9~24세)

3.2 다문화 청소년 현황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



3.2 다문화아동 현황(학급별, 유형별)

2022년 다문화학생은 약 17만 명 (전체 학생 대비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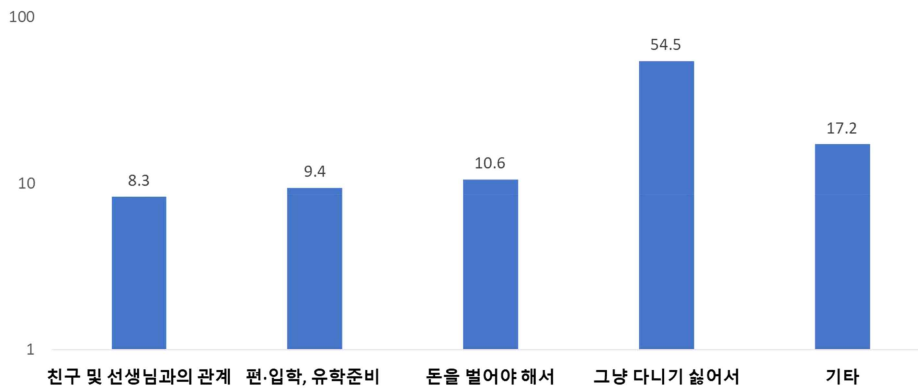
구분	초	중	고	각종학교	합계
국내 출생	84,241	29,940	11,614	234	126,029
중도 입국	5,087	2,874	1,784	193	9,938
외국인가정	22,312	6,900	3,346	120	32,678
합계	111,640	39,714	16,744	547	168,645

※ (부모 국적) 베트남 32.4%, 중국 31.4%, 필리핀 9.6%, 일본 4.7% 등

3.2 다문화 청소년 현황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요약

4 학업 중단 사유



3.3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다문화교육지원팀(2017.01. 13일 보도자료)**

○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2017년)**

191.2억(국고 71.8억, 특교 119.4억)

\* 경로당 (6만 5192개소) 냉난방비 지원 602억(국고 301억, 특교301억)

○ **지원 영역**

- 1)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2)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 3) 다문화교육 활성화의 기반 마련

1)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지원 (개요) >

	진입	적응	발전
국내출생 자녀	·다문화 유치원에서 언어 및 기초학습 ('17년 17개 시도 운영)	·대학생 멘토링 지원 ·기초학력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기초학습 지원	·롤모델과 함께 하는 진로 설정 ·언어, 수·과학 등 재능을 키우는 글로벌 브릿지 확대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자녀	·예비학교에서 한국어(KSL), 한국문화 학습 ·모국어를 활용한 외대 대학생 멘토링 (서울)	·원적학급 입급 후 모니터링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지도

3.4 다문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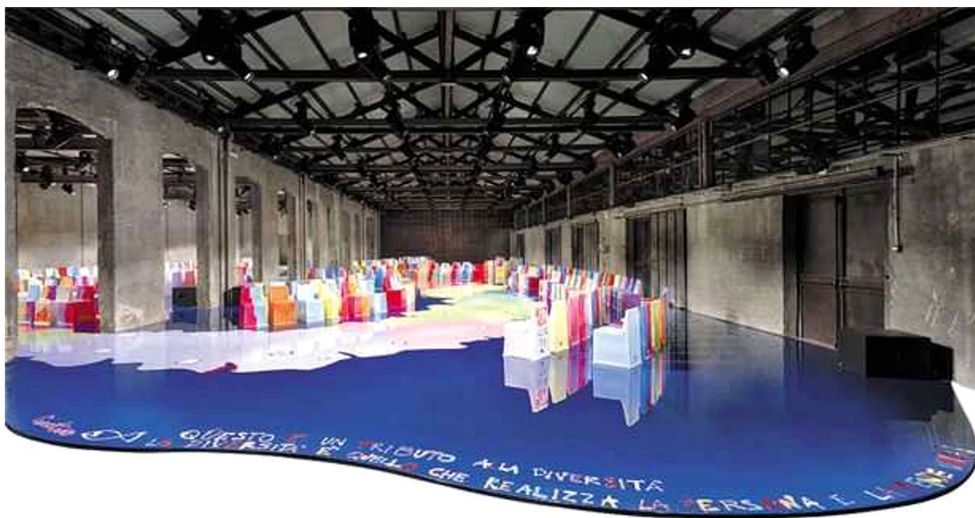
- 1) 다문화를 위한 **통합 목표 및 원칙의 확립**
- 2) 다문화 **국가별,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 3) 다문화가정의 부모, 친척, 멘토 및 교사 등 **지원인력의 다문화 전문화 연수**



### 3.4 다문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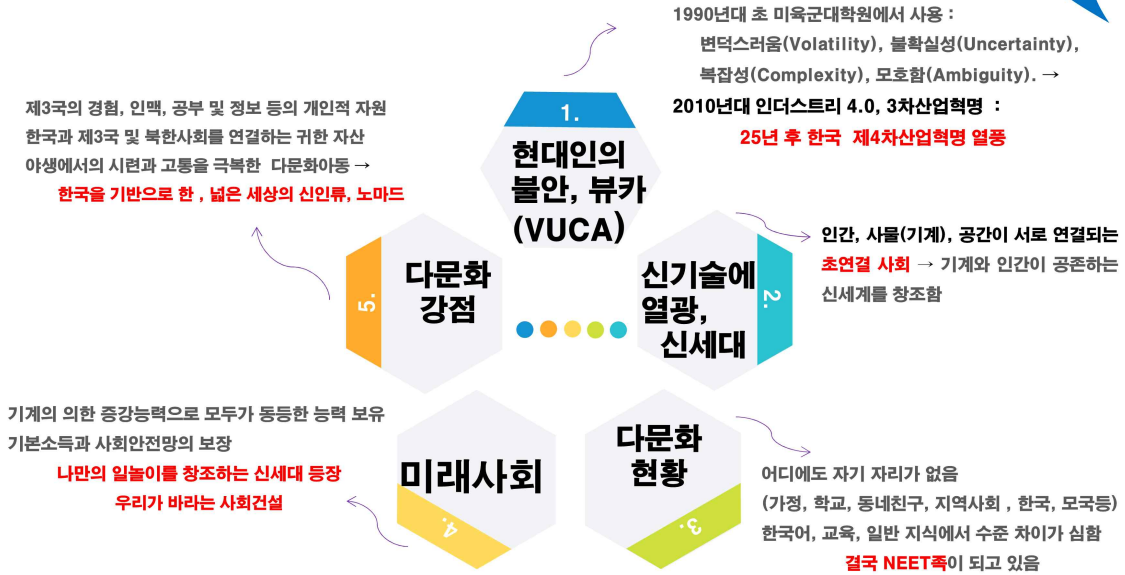
- 4) 일반인 대상의 **다문화사업에 다문화 유형별 교육 포함**
- 5) **다문화** 전수조사와 함께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 6) 법적(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처우기본법 등) 대상에서 제외된 **다문화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 7) 대한민국 모든 거주자와 해외거주 한국인에 대해 **국민기본권을 적용**

[“똑같은 제품의 시대 끝... 자동차도, 컵도 나만의 디자인 찾을 것”](#) - 밀라노 패션쇼, 디자이너 페세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 2022.10.10



밀라노에서 열린 '2023 봄-여름 보테가 베네타 패션쇼' 무대에 설치된 산업 디자이너 가에타노 페세의 의자. /보테가 베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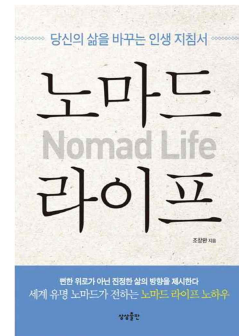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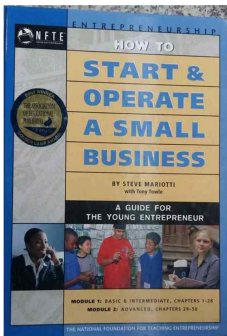
4. 미래다문화사회



마치며

미래사회의 모든 개인  
=  
다문화인

미래변화에 맞서야 하는  
모든 현대인에게,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 및 노마드 라이프를**  
추천합니다.



주제발표1

# 지역사회를 위한 다문화센터의 미래전략

김영순 (인하대학교 교수 / 다문화융합연구소장)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주제발표(2022.11.18.)

# 지역사회를 위한 다문화센터의 미래전략 -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 개념을 중심으로 -

김영순 교수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인하대학교 부설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BK21 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단장

1

## 강연자 소개\_연구



2

## 목차

---

1. 초국적 이주와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
2.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를 위한 타자 철학
3. 평택시 이주민의 다양성
4. 사회통합정책의 개념
5. 사회통합 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
6. 평택시 지역사회 연계 다문화센터 미래 전략

---

3

## 1. 초국적 이주와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1)

---

- 지속가능한 사회는 어떤 사회를 말하는가?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능성 즉 지속가능성을 보유한 사회.
-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
- 곧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골고루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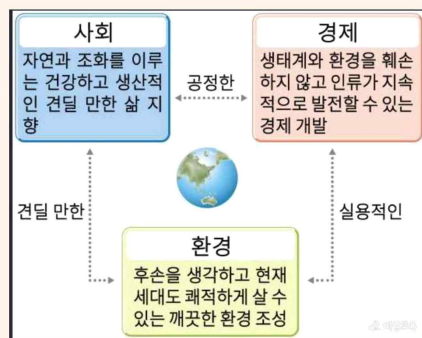
## 1. 초국적 이주와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2)

-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란 세계화에 따른 초국적 이주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주자와 정주자 간의 다양성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성장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동체의 협력과 정책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

5

## 1. 초국적 이주와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3)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체계



6

## 1. 초국적 이주와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4)

- 지속가능발전의 4대 원칙

: 세대 간 형평성, 사회구성원을 위한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초국가적 책임

- 경기도 평택시는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하는 초국적 도시이자 다문화 도시의 전형을 보여주어야 함
-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는 지속가능한 발전 4대 원칙과 더불어 다문화주의 포괄해야 함
- 다문화주의는 다원주의에 기반을 두며, 다원주의는 인류학 혹은 다민족학 연구에서 문화다원주의와 결합하여 ‘문화상대주의’ 라는 가치 제공
- 평택시가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 필요.

7

## 2.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를 위한 타자 철학(1)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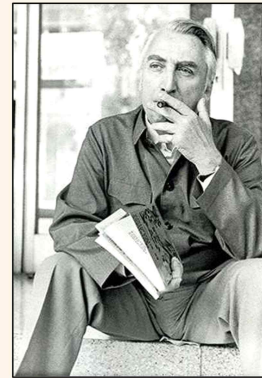
8



## 2.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를 위한 타자 철학(2)

-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낄 것임.
- 이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신체의 일부로 동일화함으로써 기존의 사랑의 아픔에 대한 관조적 공감을 걷어낸 일체적 연민의 표현임.
- 사랑하는 사람이 지닌 영혼의 아픔까지 온몸으로 기억해내려는 단 하나의 진실한 문장이기에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음.



9

## 2.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를 위한 타자 철학(3)

- “모든 것이 윤리적 문제이다.”
- 레비나스는 실제로 한 곳에 정착해서가 아니라 여러 곳을 이주하면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세계 도처에서 차이와 차별을 경험
-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삶에서 존재와 윤리의 하나 됨을 주장하면서 윤리의 제 1의 철학으로 무한 윤리론을 펼침.
- 오늘날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과 난민들과 더불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오늘날 한국의 사회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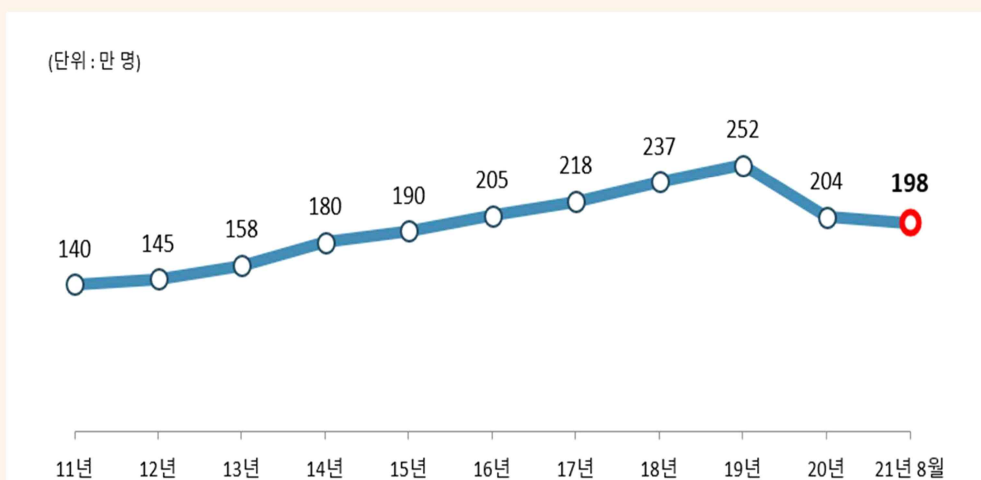
10

## 2. 지속가능한 다문화도시를 위한 타자 철학(4)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를 우리 공동체로 여기며 그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임
- 그러려면 레비-스트로스가 지적한 식민주의적 갑질이나 문명적 자부심과 같은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내려 놓아야 하며, 이는 레비나스가 강조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실천과 일맥상통함.
- 타자를 주체와 동일시하는 한 다문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도시는 다문화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상호문화이해를 실천해야 하고, 모든 제도는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해야 하며, 학교는 타자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협동학습을 적극 권장해야 하고 이를 수업 현장에 적용해야 함.

## 3. 평택시 이주민의 다양성(1)

- 체류외국인 증감추세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21.08.)

### 3. 평택시 이주민의 다양성(2)

-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단위:명)

계	경기	서울	충남	인천	경남	경북	부산	충북
1,087,939	359,827	224,144	66,780	65,480	64,122	51,043	38,936	35,622
	전남	전북	대구	제주	광주	강원	대전	울산
	31,998	30,135	26,885	21,225	20,658	17,324	16,901	16,859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거주지역별 현황

계	경기	서울	인천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울산
472,314	200,035	140,211	31,400	27,197	13,628	12,864	8,560	6,313
	부산	광주	대구	전북	전남	강원	제주	대전
	6,246	4,810	4,717	3,500	3,417	3,287	3,108	3,021

- 국민의 배우자 거주지역별 현황

계	경기	서울	인천	경남	충남	경북	부산	전남
166,447	50,762	27,333	11,503	10,800	9,647	7,971	7,313	6,761
	전북	충북	대구	강원	광주	대전	울산	제주
	6,020	5,573	5,507	3,850	3,727	3,424	3,390	2,866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21. 08.)

### 3. 평택시 이주민의 다양성(3)

- 평택시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명)

총계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72,537	32,777	8,712	3,071	1,410	8,191	11,393	3,067	3,916

- 평택시 다문화가족 현황

총계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17,207	2,611	5,893	2,834	4,014	4,689

(출처: 통계청, 202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3. 평택시 이주민의 다양성(4)

- 평택시 구역별 다문화가족 분포 현황

합계 17,207명  
(읍단위 기준)



15

(출처: 통계청, 202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 4. 사회통합정책의 개념(1)

- 사회통합의 원리를 모색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숙제.
-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은 상부상조와 공존과 상생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사회통합의 해소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갈등 해소 및 소득의 불균형, 계층 간의 갈등 해소, 세대 간의 갈등 해소 등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더하여 다문화 사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회통합의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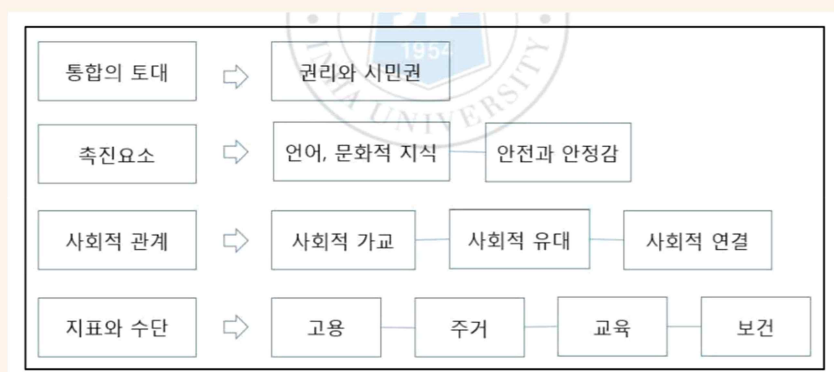
16

## 4. 사회통합정책의 개념(2)

- Ager & Strang(2008)은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상위개념으로 통합의 토대, 촉진 요소, 사회적 관계, 통합지표와 수단으로 구분
- 이주민 통합의 토대는 이주민의 권리와 시민권이라고 보았으며 사회통합의 촉진 요소는 언어 문화적 지식과 안전과 안정감으로 보았음.
- 그 외 정책을 연결해주는 결합조직과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였는데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유대, 사회적 가교, 사회적 연결로 구분된다고 보았음.
- 마지막으로 지표와 수단으로서는 고용, 주거, 교육, 보건 등이라고 구분하였음.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17

## 4. 사회통합정책의 개념(3)



Ager & Strang(2008: 170). Understanding inter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18

## 5. 사회통합 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1)

### 1) 사회통합정책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결혼 준비기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및 사전 정보 제공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체계적 관리</li> <li>• 결혼이민예정자 현지 오리엔테이션 내실화</li> <li>• 한국 예비 배우자 결혼 준비 교육 실시</li> </ul>
가족 형성기	결혼이민자의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지정·확대 (2009년 100 개소 → 2010년 159 개소)</li> <li>• 다국어 판 생활·정책정보 매거진 (Rainbow +, 연 4 회), 한국생활 가이드 북, 소비자 정보안내 책자 발간·배포</li> </ul>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교육: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li> </ul>
자녀 양육기 및 정착기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피해 상담·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 및 전용 센터, 법률 구조기관 등 관련기관 간 연계강화</li> <li>•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및 방문교육지도사의 남편교육·상담 기능 강화·결혼이민자·배우자·시부모·부부관계·부모자녀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li> </ul>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양육 가정방문지도 실시</li> <li>•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언어발달진단, 교육프로그램 제공 (언어발달지도사 100여 명)</li> <li>-센터 내 다문화 언어 교실개설 및 보육시설에서 파견서비스 제공보육시설에서 사회정서증진 프로그램 등</li> <li>다문화 프로그램 실시</li> <li>•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 역량 개발</li> <li>• 어릴 때부터 이중 언어 사용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li> </ul>

## 5. 사회통합 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2)

### 2) 다문화가족 정책 서비스 기관 사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5. 사회통합 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3)

### 2) 다문화가족 정책 서비스 기관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특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ul>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교육 실시</li> <li>• 방문교육지도사 직무지식평가 실시</li> <li>• 센터 운영 지원 및 현장지원</li> <li>• 슈퍼비전 지원 및 실시</li> <li>• 만족도 조사 지원</li> </ul>
네트워크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관리기관과 권역 내 센터·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li> </ul>

## 5. 사회통합 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4)

### 2) 다문화가족 정책 서비스 기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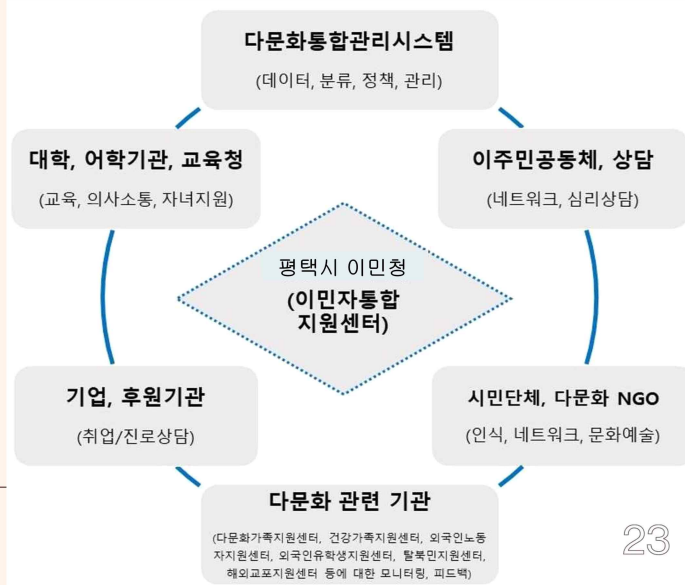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족 센터

사업영역	기본 사업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이혼전·후 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이중언어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가족돌봄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자녀돌봄 품앗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가족 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개선 및 공동체익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다음사업, 다함께 프로그램

## 6. 평택시 지역사회 연계 다문화센터 미래 전략

- 지속가능한 다문화 도시를 위한 **평택시** 이민청의 패러다임

- 사회 지향: 지속가능한 사회
- 사회 철학: 타자지향성
- 사회 정책: 상호문화주의적 사회통합 정책



23

감사합니다.

24



주제발표2

# 빅데이터를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전략

송원일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교수)





# 빅데이터를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전략

송원일 박사

## 강사소개

### 송원일

- 교육학 박사
- 평택대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비전임교수
- 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사무국장
- 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총무이사
- 사)청소년미래연구 법무이사



# 연구의 필요성

## 현황분석

### 문제제기

### 선행연구

### 연구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했음에도 약 200만 명의 체류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 이중 청소년은 약 25만으로 확인됨.
- 전 세계적인 인구가동의 추이로 보아 우리 사회에 중도입국청소년의 증가는 가속화될 것임. 특히 코로나시국에 K-방역을 시작으로 K-POP, K-웹툰, K-푸드 등의 K-밈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중도입국청소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 연구의 필요성

## 현황분석

## 문제제기

### 선행연구

### 연구목적

-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다수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분포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선주민 청소년들과의 교육 및 진로 부분에 있어서 심한 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발생하면서 선주민 청소년들과 중도입국청소년들 간의 격차는 심화되었음.
-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집에만 있거나, 기존에 이용하던 센터가 문이 닫히면서 더욱 소외되었음. 즉, 이들이 코로나시국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현황을 알기 어려웠음.

4

# 연구의 필요성

- 필요성
- 문제제기
- 선행연구**
- 연구목적

-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는 적응 및 부적응 등 입국 초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는 한국어교육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상을 발굴 및 섭외하기 힘들다는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연구의 특성상 양적 연구를 비롯해 고급통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중도입국청소년의 입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에 거주 중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는 것은 선행 연구로부터 확장된 연구주제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의 필요성

- 현황분석
- 문제제기
- 선행연구
- 연구목적**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 빅데이터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넷마이너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 언론보도 빅데이터에 나타난 핵심 주제어와 이슈를 도출하였음.
- 이를 통해 코로나시국 중도입국청소년 이슈의 시사점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중도입국청소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연구방법

연구방법

빅데이터

자료수집

-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25일까지 '중도입국'으로 검색한 775건의 언론보도 자료
- 전국일간지 11개, 경제일간지 8개, 지역일간지 28개, 방송사 5개, 전문지 2개 등 총 54개에서 제공하는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분석

데이터 클리닝

- 정규화 작업(띄어쓰기, 유사어 등 통일)
- 불용어 처리('다문화', '외국인' 등)
- 형태소 분석(어휘 형태소 중 명사만 검색)

분석방법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주제어 분석
- 토픽 모델링 분석(LDA기법)

7

# 연구방법

연구방법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 문자로 이루어진 비정형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 주제어 빈도 분석: 문서에서 단어가 나타난 횟수 또는 가중치를 수치화하여 표현하는 분석방법

토픽 모델링 분석

- 비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확률분포를 바탕으로 주제어와 토픽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
- LDA기법(디리클레 할당 기법): 대량의 문서 집합에서 핵심 주제어를 출현확률에 따라 토픽별로 군집화하여 분류하는 분석기법

8

## 연구결과(주제어 분석)

중도입국청소년 TF기준 상위 빈출 20개 단어

순위	연관어	건수	순위	연관어	건수
1	교육	902	11	한국	263
2	문화	768	12	지역	249
3	학생	493	13	수업	235
4	학교	471	14	가족	230
5	지원	435	15	사회	222
6	한국어	377	16	자녀	202
7	센터	349	17	단계	192
8	부모	334	18	학교	189
9	운영	270	19	대상	188
10	교육청	264	20	가정	180

9

## 연구결과(주제어 분석)

중도입국청소년 TF-IDF기준 상위 빈출 20개 단어

순위	연관어	건수	순위	연관어	건수
1	편의점	2.247	11	살랑	1.926
2	졸업식	1.926	12	영재	1.926
3	발표회	1.926	13	코리아	1.926
4	혼혈아	1.926	14	화재	1.926
5	월세	1.926	15	국민학교	1.926
6	아이스크림	1.926	16	학회	1.926
7	기업가	1.926	17	지지	1.926
8	사카구치	1.926	18	공부방	1.906
9	혼인	1.926	19	아파트	1.869
10	인동	1.926	20	왕	1.86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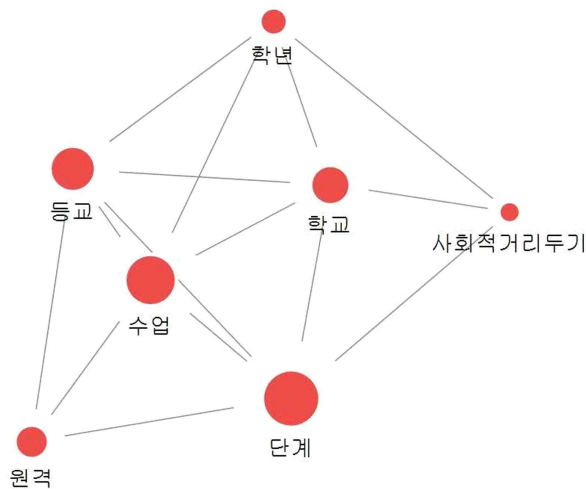
# 연구결과(토픽 분석)

중도입국청소년 토픽1 핵심 주제어

토픽명	주제어	출현확률	주요 언론보도 제목	언론 보도 건수 (건)	토픽 비중 (%)
[토픽 1] 중도입국 청소년 맞춤형 지원 위한 대면지도	단계	0.035683	'세종교육청, 오늘부터 '학교밀집도 2단계' 격상	774	29.7
	수업	0.033888	아산시, 다문화가정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눈길		
	등교	0.032544	수도권 광주도 2학기부터 3분의 2 등교		
	학교	0.024025	모두가 한 마음! 다름이 함께 하는 '동부다문화교육센터'		
	원격	0.015981	14일부터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2학기 전면등교 불투명		
	학년	0.014739	'읽기 곤란' 따른 학습 소외 없앤다		
	사회적 거리두기	0.014138	세종시교육청, 30일부터 '학교밀집도 2단계' 격상		

# 연구결과(토픽 분석)

중도입국청소년 토픽1 핵심 주제어 Spring 2D





# 연구결과(토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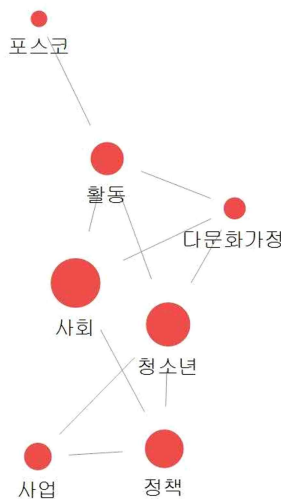
중도입국청소년 토픽2 핵심 주제어

토픽명	주제어	출현확률	주요 언론보도 제목	언론 보도 건수 (건)	토픽 비중 (%)
[토픽 2] 증가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의 노력	사회	0.017542	경기도 광주시, 2020년도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공모	792	30.4
	청소년	0.016005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책	0.011381	다문화학생 비율 첫 3% 부모국 1위 '베트남'		
	활동	0.009217	아산시 다문화 가정 학생들, 대학생 멘토와 색다른 체험활동 눈길		
	사업	0.008724	[당진 다문화]센터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문화가정	0.008299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포스코	0.007907	포스코인터,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 눈길		

13

# 연구결과(토픽 분석)

중도입국청소년 토픽2 핵심 주제어 Spring 2D



14

# 연구결과(토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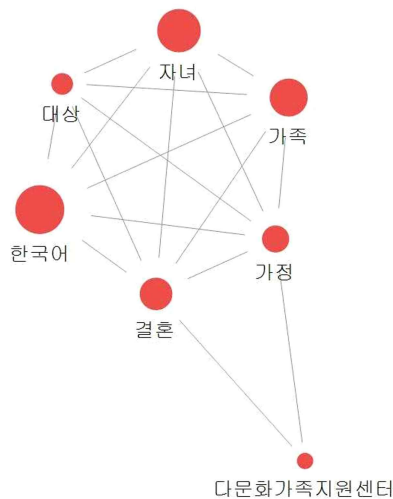
중도입국청소년 토픽3 핵심 주제어

토픽명	주제어	출현확률	주요 언론보도 제목	언론 보도 건수 (건)	토픽 비중 (%)
[토픽 3]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한국어	0.042390	다문화학생 비율 첫 3% 부모국 1위 '베트남'	1,036	39.8
	자녀	0.022755	"온라인 개학, 찾아오는 전문가 있어 어렵지 않아요"		
	가족	0.022400	한국생활가이드북 귀화부터 취업지원까지 알면 유용한 정보 한권에		
	결혼	0.022382	무주군 결혼 이민자 한글교육 프로그램 진행		
	가정	0.019029	한국생활가이드북 귀화부터 취업지원까지 알면 유용한 정보 한권에		
	대상	0.018805	아산시, 다문화가정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눈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0.014736	" 촘 촘 한 지원 체계 구축 " 광 주 시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15

# 연구결과(토픽 분석)

중도입국청소년 토픽3 핵심 주제어 Spring 2D



16

## 시사점

1

언론매체는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주제로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교육지원', '부모교육',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쟁점에 초점을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중도입국청소년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과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같은 교육내용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함

3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사례관리 및 지원 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해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가 서로 조화롭게 제공되도록 해야함

4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 발굴에 힘써서 현재 구축된 촘촘한 지원 체계가 모든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함

17

## 정책제언

### → 포스트코로나 중도입국청소년 위한 추진전략

비전

정부 및 지자체가 한국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도입국청소년도 평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

기본 방향

- 평등하게
- 필요한 것을
- 모두가

추진 전략

언어에 의한 차별이 없는 교육서비스 제공

정부 및 지역사회 차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든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기회 제공

18

# 정책제언

→ 추진전략에 따른 실천과제

추진전략	실천과제
언어에 의한 차별이 없는 교육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로 상황별 안전교육자료 제작</li> <li>• EBS를 통해 제공하는 교육 방송의 다국어 서비스 제공</li> </ul>
정부 및 지역사회 차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하여 중도입국청소년 발굴</li> <li>• 문제 진단 및 평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조화롭게 제공</li> <li>•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li> </ul>
모든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의 레인보우스쿨,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체류자격 부여 및 벌금 감면</li> <li>•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류 기간 연장, 영주권 및 국적취득 시 가산점 부여</li> </ul>



주제발표3

# 미래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위한 다문화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이정금 (순천대학교 교수)





## '미래사회 문화다양성을 위한 다문화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이정금<sup>1)</sup>

### 1. 서론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여 왔다. 초창기에 다문화교육 정책은 소극적 수준(김혜순, 2007, 2010; 오경석 외 2007)이었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제결혼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사회의 실제 구성원으로 지위를 갖게 된 이민자들이 급증하여 2005년을 기준으로 새로운 다문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김혜순, 2007; 김현미, 2009; 이민경, 2008).

이에 정부의 여러 기관들도 다문화교육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며, 그 외에 다문화 교육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기관, 학교,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 문화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가치와 특색을 지닌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다문화사회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부터 각 나라들은 소극적 다문화 교육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다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최근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었다. 이에 다문화교육의 방향이 소극적다문화교육에서 문화다양성교육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상호문화존중교육 점차 변화해가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8)에 의하면 문화다양성은 언어, 의상, 전통, 사회를 구성하는 방법, 주위와의 상호교류관계, 종교와 도덕에 대한 생각 등 사람들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문화다양성은 개인 및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것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증진시키는 것은 인류의 현재와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자라는 학생들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핵심구성원인 그들이 다양한 집단과 상호 의사소통에 필요한 태도 및 지식, 그리고 기술을 습득하여 상호작용 및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다양성교육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이 교육현장의 중요한 화두가 됨에 따라 세계의 많은 교육 연구자들이 다문화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문화다양성교육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Arnensen, et al., 2008; Costley, 2012;

1) 이정금·이병환(2020). 문화다양성 교육정책 분석과 발전 방안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9권 제2호, 1~24. 논문 인용

2) 이정금(2018). 미래사회 한국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탐색. 교육문화연구 제24-1, 549-567. 논문 인용

Pagani, Robqstelli, & Martinelli, 2011; Ponciano & Shabazian, 2012).

우리사회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지평이 세계화의 추세에 맞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그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학문적 가치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사회 문화다양성을 위한 우리사회에 맞는 이상적인 다문화 교육정책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 및 특징

다문화교육의 개념은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이념에 따른 다양한 집단의 문화를 허용적인 자세로 인식하며, 타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다문화교육은 정치 통합과 국민통합, 그리고 사회통합 등 소수 민족 및 소수집단의 고립을 막고 기회 및 결과의 평등을 통해 갈등 해소와 소외를 해소하는 데 있다(정갑영 외, 2004).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소수자의 국내 적응과 자립도 강화, 둘째, 소수자의 교육기회 확대와 사회참여 및 기회 균등, 셋째, 소수자 간의 갈등과 마찰방지, 넷째, 다수자들의 소수자들에 대한 문화적 민감성 인정, 다섯째, 구조적인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해소, 여섯째, 사회적 통합추구 등의 여섯 가지가 그것이다. 이처럼 소수자들에 대해 시혜적 접근과 보상교육을 강조하는 다문화교육은 소극적 다문화교육이라 볼 수 있어서,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시키는 적극적 다문화교육과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문화다양성 교육은 인종, 민족, 계층 간의 문화 및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쌓는 단순한 소양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이라는 김수이(2008)의 주장, 인종, 민족,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과 문화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편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은지용(2009)의 관점도 있다. 또 인종, 성, 민족, 사회, 계층 간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단일민족 중심의 사고와 편견을 극복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여 나아가 타문화로부터 파생되는 문화의 풍부함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이라고 강인애·장진혜(2009)의 주장은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김현덕(2010)은 문화다양성 교육이 인종, 성, 민족 및 자민족 중심 사고와 편견 극복, 자신의 배경과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집단의 배경까지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는 점으로 개념을 범주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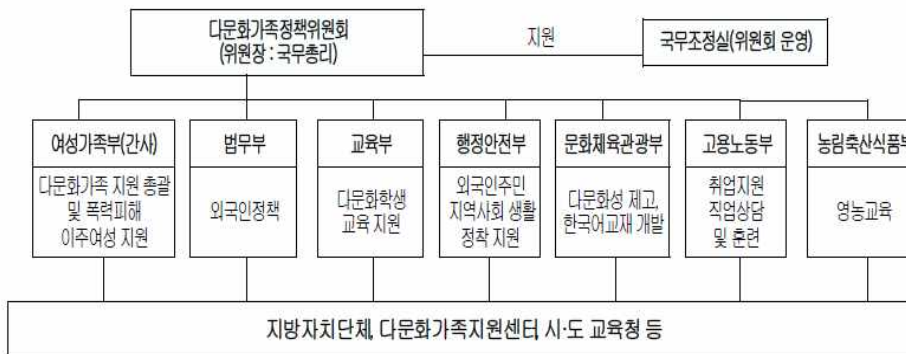
위의 주장을 종합해볼 때, 문화다양성 교육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 민족, 성, 계층, 지역, 사회, 종교 등 모든 집단의 문화적 배경과 차이를 인정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문화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공존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3. 다문화교육과 문화다양성 교육 현황

####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추이와 현황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2010년 5월의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기초로 하여 각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3~2017)은 2012년 12월에 마련되었으며, 각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왔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2018년 2월에 수립되어 2020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3(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 내지 제3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①항에 의거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출처: 감사원, 2019. 이정금·이병환(2020). 문화다양성 교육정책 분석과 발전 방안 탐색, P.11  
재인용

1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이란 비전 아래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이란 목표를 세우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 결혼 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라는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다문화가족 정책 주관부처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운영을 여성가족부로 조정하였다(2010년 3월).

동 위원회에서는 훈령 개정을 통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부처 간 이견조정 및 지원 기능은 국무총리실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이란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 2022 Multicultural Forum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 추진체계 정비'라는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였다.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서는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섯 개의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 장기 정착 지원' 둘째,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강화', 넷째,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섯째, '협력적 다문화 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이 다문화가족 정책을 시행할 대상기관은 18개 기관 및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된다. 2019년의 경우 이 정책 수행을 위한 총 과제는 중앙부처 127개, 지자체 1,087개이며, 예산은 4,689억원(중앙부처 3,893억원, 지자체 796억원)에 달했으며, 총 소요예산은 2018년 대비 777억 원 증가하였고, 예산규모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순이다.

### 2) 각 부처별 다문화교육정책 시행 현황

중앙부처별 다문화정책 과제 현황은 <표 1>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1> 각 부처별 다문화지원 정책 현황

부처별	과제별(예산, 백만원)					과제수 (예산)
	다문화가족 장기정착지 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 적 참여확 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 정적 성장 과 역량강 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 회적 다문 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 문화 가족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 강화	
교육부		1(22), 3(3,987) <sup>2)</sup>	10(12,260)	2(170)	1(3,127)	17(15,579)
외교부			2(8,576)			2(8,576) 5(0) <sub>-3)</sub>
법무부	1(0)	2(400)	1(0)	3(314)	1(0)	8(714)
국방부				1(6)		1(6)
행정안전부		1(0)		1(0)		2(0)
문화체육관광부		2(2,750)		5(952)		7(3,702)
농림축산식품부		2(1,666)				2(1,666)
산업통상부			1(50)			1(50)
보건복지부	1(1,605)		2(100) <sup>4)</sup>	1(1,132)		2(2,737)
고용노동부		3(6,957)	1(1,900)			4(8,857)
여성가족부	18(292,131)	11(22,129)	14(18,830)	10(1,312), 1(200) <sup>5)</sup>	7(-)	60(334,402)
국토교통부	1(0)					1(0)
중소벤처기업부		1(4,957)				1(4,957)
방송통신위원회				1(2,387)		1(2,38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		2(0)
경찰청	2(0)			1(321)		3(321)
국세청	1(0)					1(0)
농촌진흥청		1(70)		1(70)		2(140)
소방청	2(891)					2(891)

총 과제 수	26	24	29	28	9	127
--------	----	----	----	----	---	-----

출처: 이정금·이병환(2020). 문화다양성 교육정책 분석과 발전 방안 탐색, P.13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2019년도에 계획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중의 각 부처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10개, 14,229백만 원)에 편중되어 가장 많은 과제와 예산을 투입하고, 그 외 과제는 소극적인 편이다.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운동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1개, 1,879백만 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2개, 1,148백만 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1개, 22백만 원) 순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교육과 관련하여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관한 과제는 겨우 2개뿐이다. 각 부처별 다문화교육정책 현황에서 본 것과 같이 아직도 우리사회는 문화다양성 교육과 관련한 다문화교육정책은 현저히 부족하기에 앞으로 정부차원 정책에서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다양한 다문화교육정책을 발굴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 3)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정책은 <표 2>과 같다.

<표 2>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현황

지방자치단체	과제별(예산, 백만원)					과제수 (예산)
	다문화가족 장기정착지 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 정적 성장 과 역량강 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 회적 다문 화 수 용 성 제고	협력적 다문 화가족 정책 운동을 위한 추진체계 강 화	
서울특별시	13(2,567)	9(1,333)	13(1,413)	12(595)	2(1,100)	49(7,008)
부산광역시	16(2,621)	12(221)	18(4,620)	13(406)	4(229)	63(8,097)
대구광역시	19(827)	14(220)	11(676)	16(734)	4(146)	64(2,603)
인천광역시	18(693)	22(707)	12(2,753)	21(619)	4(30)	77(4,802)
광주광역시	18(3,432)	12(495)	10(204)	14(483)	5(990)	59(5,604)
대전광역시	17(746)	12(165)	10(623)	15(289)	3(64)	57(1,887)
울산광역시	13(2,17)	10(145)	6(223)	15(375)	1(1)	45(961)
세종특별자치시	3(90)	6(115)	6(71)	2(18)	1(1)	18(295)
경기도	24(1,161)	24(1,659)	30(4,071)	17(2,096)	4(944)	99(9,931)
강원도	41(672)	17(291)	68(1,406)	6(404)	24(2,380)	156(5,153)
충청북도	18(579)	18(466)	15(648)	28(301)	6(1,979)	85(3,973)
충청남도	21(554)	21(281)	18(558)	13(262)	5(99)	78(1,754)

- 2)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교육 지원
- 3)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신분안정지원(2),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교육지원(2020,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현지지원(1))
- 4)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의료지원(2)
- 5)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 자녀 현지지원

## 2022 Multicultural Forum

전라북도	10(1,708)	13(1,578)	14(1,076)	8(638)	5(1,432)	50(6,432)
전라남도	14(2,349)	9(999)	9(1,975)	15(530)	4(469)	51(6,322)
경상북도	11(640)	9(3,434)	7(1,126)	4(296)	6(2,034)	37(7,530)
경상남도	13(1,358)	14(1,767)	13(845)	15(850)	11(1,426)	66(6,246)
제주특별자치도	11(315)	10(260)	6(328)	6(89)	-	33(992)
총계						1,087(79,591)

출처) 이정금·이병환(2020). 문화다양성 교육정책 분석과 발전 방안 탐색, P.14

## 4. 문화다양성 정책의 문제점과 문화다양성 교육 방향

### 1) 현행 문화다양성 정책의 문제점

2015년 다문화가구 실태조사 결과 전체 다문화 가구는 278,036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형도 점차 다양해져 간다. 이에 따라 다문화교육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과 예산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수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차이에서 오는 차별을 시정하고 공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문화주의를 토대로 하나의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차별과 편견이 없이 문화적 다양성 인정 및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와 적극적인 정책 실천 이념이다.

여기서 먼저 2021년 “결혼이주여성의 일터학습 및 일터적응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은 다문화교육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소수민족무시, 일과 육아의 어려움	
참여자9	A: 이제 아예 입사 되면 아이가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 시간이. 그러니까 학교 시간이라 이렇게 막 아마 어린이집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중략-. 어려웠던 것은 이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아기 챙기면서 체력이 체력이나 그런 거야. 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들이. 엄마가 맨날 학교도 가고 같이 많이 안 놀아줘서 미안. 그냥 집에 그냥 설까. 라고 했어. 그 아니, 엄마 이래. 엄마 공부하는 게 보기 좋대. 좋다고 했어요.(참여자 9)
참여자 6	A:지금 느낀 거는 옛날에는 맨날 무시해요. 다문화에 다른 친구들이 그런데 지금은 한국 거꾸로 하더라고요(참여자 6)

다문화 인식 - 다문화교육대상의 차별(무시), 폭행, 음식문화차이	
참여자4	A: 나. 아니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는. 많이 겪어 본 바는 한국에 와서 그렇게 결혼. 이민자만 한국 문화 한국말을 알아야 한 거 아니고 그 남편 가장도 그렇게 같이 그렇게 이거 인정해 주고. 그 문화도 알고 있었으면 해요.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한국말 하니까 그런 거 그런 문제도 제가 많이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부모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미얀마나 베트남 이런 나라는 한국 보다 후진국이잖아, 그래서 낮게 보이고. 일단 낮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낮추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사이가 가까워 해야 되는데 모른 척 해서. 왜냐면 한국에 왔는데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다문화 센터도 안 보내고 집에만. 그러면 한국말을 어떻게 배워. 그리고 자기 나라 음식 냄새 난다고 하지마라고. Q: 아니죠. 그것은 A: 김치 우리는 좋아하니까 상관없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냄새 나, 아니 제가 몇 번째 해결. 미얀마 사람. 두 명도 제가 해결해 줘서 시어머니가 뽀까지 때리니까. 제가 “어머, 저 어머니 외국사람 때리네. 이렇게 힘으로 하면 안 돼, 경찰 신고하면 어머니 걸릴 수 있다”고 해서 바로

	<p>해결했어. 때리기도 해요 때려서 머리를 이렇게. 그거 다 다문화센터 간다고, 일 안하고 다문화센터 간다고 해서, 가방 매고 하는데 뭐 머리를 이렇게 묶었잖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아 가서 뺨을 때려. 뺨을 때리니까 그 동생 무서워서 한국말로 모르니까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내 손 무는 거면 막 말하고 머리 뒤통수 때리는 거 말하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 어머니 그렇게 그렇게 해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도움 줄게. 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뭔가 해줘서 여수에 사는 동산은 그랬어</p>
--	---

열악한 환경- 문화차이, 시어머니 동거, 기대와 다른 환경, 수업방식	
참여자 5	<p>A: 빛이 엄청 많았고. 우리도 밥도 못 먹어. 쌀 하나도 없어요.. 저 집에도 안 오고 돈도 안 보내 주고, 저는 옛날에 집에 있을 때 인데. 돈 있어. 동생에 대해 엄마한테 내 돈이 좀 보내주라고 오 히려 내가 돈이 있는 거. 옛날에 아가씨 때 잘 먹고 아무 거 안 해. 그냥 모여오고. 이렇게 막 해 갖고 다 보내왔어요..-중략- 밥도 못 먹고 저는 신랑도 일도 없고 돈도 못 보고 빛도 많고 집에도 안 와, 항상 우리 신랑은 없어. 집에 전에 맨날 딸내미랑. 우리 시어머니가 아파요. 지금도 병원에 입원 있어요 -중략- 요양원 안 간대요.. 형님 집에 같이 있다 못 살고 저도 오자마자 저랑 같이 살아야. 오자마자 그런 딱 이렇게. 그 날 이 같이 살면 시어머니가 이사 왔어 나한테 1년만 좀 같이 살라고. 한국말 가르쳐 준다고..</p>
참여자 1	<p>A: 처음에 저도 기대했거든요. 가원에서 이제 한국에서. 정말 부자나라인데 가서 잘 살겠다. 돈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고 나서 그게 아니에요 전혀. 이제 와서 좀 더 '내가 힘으로 스스로 돈 벌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는 정말 이제 결혼하면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부모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 있는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아기도 키워야 되고(참여자 1)</p>
참여자 2	<p>A: 소통도 안 되고 전화 소통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네 고향 가서 그냥 동네에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떠들고 싶고..(참여자 2)</p>
참여자 6	<p>A: 우리나라 달라요 선생님. 니 차례야. 오늘은 니 차례니까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막 수업해요. 선생님 보고만 계셔요. 그게 봤거든요. 보고나서 도와주지 그러니까 다음 날은 이 친구가 잘 해요. 이런 방식 수업하거든요.(참여자 6)</p>
참여자 7	<p>Q: 그럼 선생님이 취업율. 이 지금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지금 몇 군데 했잖아요 네어 취업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였을까요? . A: 사람 사람 사람(참여자 7)</p>

다문화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 현실은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아직도 소극적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가족들조차 다문화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은 우리의 현실은 부끄럽게도 소수민족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폭행을 하고 있는 가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낮은 환경이지만 부자나라에 와서 평안한 삶을 꿈꾸고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에게 문화와 언어의 차이도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무시와 편견, 차별이 그들의 삶을 더 피폐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첫째, 다문화인식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다. 다문화가정을 꾸리는 가족들조차 다문화인식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가족조차도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잘살지 못하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 차별한다는 것이다. 셋째 부자나라라고 기대했는데 실제 다문화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이다. 넷째, 다문화교육대상의 차별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극적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다문화 가족을 맞이하는 가정조차 다문화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지원 정책이 소수 민족에 대한 동화주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의 토대를 구축하고,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

비스 지원'을 목표로 세운 1차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자연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2차 기본계획을 살펴봐도 문화다양성 관련 상호문화 이해에 관한 부분은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3차 다문화가정지원정책에는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등의 목표를 내세워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섯 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문화다양성교육 관련 과제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하나밖에 없다. 그것마저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속에 소외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다문화수용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 일반 성인들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일반 국민 53.95점, 다문화교육을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64.03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변화 가능성의 기대(여성가족부, 2018)가 가능하다고 감사원 감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2018년과 2019년 시행계획을 들여다보면 주요 부처인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계획 속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 실제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 새터민 가정 등 소수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차윤경, 2008).

셋째, 1회성 사업추진 및 정책추진 과정에서 관련기관의 소통부재로 인한 중복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9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2006년부터 실시한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다가센터 한국어교육'으로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대상 및 내용이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규정하여 여성가족부의 "다가센터 한국어교육"을 폐지하고 법무부로 통합시행토록 권고하였다(2019, 감사원). 또한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자녀생활서비스' 사업이 유사·중복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2019, 감사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 간의 소통 및 의견의 불일치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처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조율 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 문화다양성 교육의 실천 방향

첫째, 다문화교육이 동화주의 교육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시행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국민들이 열린 시각으로 타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문화다양성 교육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여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높여서 상호 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한 소수자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무지개다리 사업 및 문화다양성의 날, 교육부 협력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문화다양성 이해 도모 및 상호문화교육 활성화, 문화시설 내 다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확인하였듯이 국민 대다수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낮은 수준이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정규교과에 문화다양성 교과를 신설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가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타문화를 배척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자국의 문화 및 정체성이 중요하듯이 타국의 문화 및 정체성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 인식된 사고를 바꾸는 것은 어려우나 어렸을 때부터 문화다양성교육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이동성 외, 2013; 이종일, 2010; 이은희, 2017).

넷째, 중앙컨트롤 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을 개선하여 관련기관 간의 협력 및 소통이 필요하다. 관련기관의 소통의 부재로 불이익을 받는 다문화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다문화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정책 시행 기관의 소통 및 협조가 중요하다.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상호 문화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다문화축제를 보았을 때 축제 참석자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족들이었고 일반시민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축제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문화다양성관련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영하는 방안이다. 방송은 전 국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대중매체이므로 방송의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타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에 대해 알게 된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을 것이다(장의선, 2016).

일곱째,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김현덕, 2010). 그 동안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교육은 대부분 문화센터 중심의 다문화가족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각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또는 마을단위로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마을단위로 문화다양성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마을회관에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마을주민들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타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주민 간 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5. 결론

문화다양성 교육은 미래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집단과 상호 의사소통 과정에 필요한 태도와 지식, 그리고 기술 습득에 유용하다. 인류의 인권과 평등 실현을 위해 이제 각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정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다양성이란 인종, 언어, 나이, 성, 민족, 신앙, 정치적 성향, 성적 취향, 문화 등을 포함한다.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지평이 세계화의 수준과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문화다양성교육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그 방향을 탐색하는 것은 학문적 가치가 있는 일이다.

다인종 사회로 변화하는 세계화의 추세에 맞게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수가 늘어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도 계속 증가하여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이란 소수집단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소수집단을 배려하여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문화다양성이란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한 후 인류문화의 핵심 가치로 설정되었으며 언어, 의상, 전통, 사회 형성 방법, 도덕·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 작용 등 인류 노력 및 창의성의 결실이며 경험의 총체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교육은 편견을 버리고 타문화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인종, 민족, 성, 자민족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타 집단의 배경까지 인정하여 문화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공존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이동성 외, 2013; 이은희, 2017).

결과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실천 방안으로 먼저 동화주의정책에서 문화다양성교육으로 전환이 시급하며, 둘째, 문화다양성 교육대상을 소수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하며, 셋째 학교 정규교과에 문화다양성 교과를 신설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관련부처 간의 상호협력 및 소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며, 다섯째, 상호문화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축제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여섯째, 방송통신위원회 및 대중방송을 통하여 온 국민이 다양한 문화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확대해야 한다. 타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감사원(2018). 다문화가족정책 감사자료.
- 강인애, 장진혜(2009). '커뮤니티 기반 다문화수업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 초등학교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2(2). 71-97.
- 교육부(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다문화교육지원팀.
- 교육부(2019)/ 2019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다문화교육지원팀.
- 김수이(2008). 다문화시대의 문화교육과 국어/문학교육: 김수영의 시「거대한 뿌리」비평교육의 경우. 우리말글, 42. 181-202.
- 김현덕(2010). 다문화교육의 내용체계 구축과 실천방안. 비교교육연구, 20(5). 109-134.
- 김현미(2009).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가부장제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김혜순(2007). 한국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위원회 최종보고서.
- 김혜순(2010). 이민자사회통합정책(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민정책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 은지용(2009). 다문화적 인성 발달 이로에 기반한 다문화 학습 모형 탐색. 시민교육연구, 41(1). 107-139.
- 여성가족부 (2018).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가족사업안내 1, 2.
- 여성가족부(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2008).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동성 외(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질 및 이론적 배경 고찰. 다문화교육연구, 6(1). 51-72.
- 이민경(2008).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배경과 쟁점. 교육과정평가연구, 10(2), 53~76.
- 이은희(2017). 예비교사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한국교원교육연구, 34(4). 127- 147.
- 이정금(2018). 미래사회 한국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탐색. 교육문화연구 제24-1, 549-567.
- 이정금(2020). 문화다양성 교육정책 분석과 발전 방안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9권 제2호, 1~24.
- 이정금(2022)·심현. 결혼이주여성의 유형별 일터학습과 일터적응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1권 제2호, 145-178.
- 차윤경, 부향숙, 윤용경(2011). 다문화교육: 현안과 전망.



## 사례발표1

### 김재석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





## 외국인유학생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소개

-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해외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대상으로 시범 실시함
- 2022년 1월 참여 대상을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으로 확대하고 2022년 6월에 참여자에 대한 혜택 등을 추가하여 제도 개선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 외국인유학생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알림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체류에 도움이 되고자 발표합니다

수 원 출 입 국 외 국 인 청  
평 택 출 장 소

## 1. 목 적

농·어촌에서 연중 상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국내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를 상시화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

## 2. 참여대상 외국인 유학생

-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 ※ 한국어연수(D-4-1), 단기유학(D-2-8)자격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 계절근로 참여 가능
-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3. 신청 절차

### 1) 신청 방법

- 국내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시,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 외국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관서에 방문하여 신청
- 국내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시, 본 장에 따른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수수료\*를 면제

### 2) 근로계약 체결 가능 기간

- 최소 1주일부터 최장 5개월까지

### 3)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

#### 4.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외국인유학생 혜택(D-2, D-4)

- 점수제 우수인재(F-2-7)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근로기간	30일(1개월) 이상	60일(2개월) 이상	90일(3개월) 이상
가점	3점	5점	10점

- 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근로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 5. 연락처

- 전화 : 031-8024-9612





## 사례발표2

### 김세영 (고양이민자통합센터장)





## 지역 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

김세영(이민자통합센터장)

2019년과 2020년 고양시 거주 다문화가정 및 이민자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과 이민자가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요하고 요리나 자격증 같은 전문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원한다고 답한 이민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전성훈, 2020)

이민자통합센터는 고양시와 파주시를 지역으로 한 법무부 위탁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 8거점이며 7개 운영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민자통합센터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건강한 마을을 구성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마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우선 이민자통합센터 주요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사회통합프로그램

체류자격 변경 및 영주나 국적취득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고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들이 E-7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원할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별 점수가 가점이 되기 때문에 매년 문의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 취득이나 국적취득을 위해 종합평가 시험에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통합센터는 2019년 75개 과정 1,503명의 참여자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922명, 2021년 1,300여명의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표1-1 경기8거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현황>

	운영기관 수	교육 과정 수	참여인원	교육방법
2019년	7개	75개	1,503명	오프라인
2020년	7개	74개	922명	온라인
2021년	7개	81개	1,300명	온라인/오프라인

(출처: 이민자통합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장점은 단계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한국사회이해를 통해 한국사회 적응에 기본 소양과목을 정책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필요성을 느낀 이민자들의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에 비해 2020년 참여율이 떨어졌으나 2021년과 2022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민자통합센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들을 활용하여 센터가 목표하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마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2022 Multicultural Forum

### 2. GP외국인 자원봉사단

2019년 고양시, 파주시 이민자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창단하였다. 투표를 통해 회장단을 선출하였고 각 나라 대표를 중심으로 부회장과 임원을 세웠다, GP외국인 자원봉사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매 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여 주차봉사와 행사 도우미를 하였으며 고양시 문화예술과 주최 음악회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주민을 섬기는 일을 하였다. GP 외국인 자원봉사단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지역사회 여러 행사에 초청이 되었고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해 지하철 역사에서 마스크 쓰기 캠페인과 코로나 예방에 적극 동참하자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3. 외국인 범죄 피해지원단

2019년 7월 범죄피해지원센터와 연합하여 외국인 범죄 피해지원단을 조직하였고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을 지원하여 법정 동행과 사건 조사시 통역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지역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 유형에 대해 교육하고 법정 용어를 공부하면서 통역이나 번역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였다. 외국인 범죄 피해지원단은 현재 2기까지 모집되어 운영중이며 계속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4. 이민자 뉴스 기자단

고양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에 있다. 고양시 홍보영상과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행사를 영상으로 담아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고양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이민자들은 고양 유튜브 채널 접근이 어려웠으나 얼마 전 고양시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이민자통합센터가 협약을 통해 유튜브 채널 번역을 하게 되었고 번역된 홍보채널은 이민자들에게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고양시정 소식도 영상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접근하도록 지자체와 노력하고 있다.

### 5.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원당골목학교

고양시 덕양구에는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자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들 학습능력과 집안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이민자통합센터는 지역 아동들을 위한 '원당골목학교'를 개교하였다.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원당골목학교에서는 국어 보충, 수학 보충, 이중언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2-1 원당골목학교>

학교명	교육내용	참여인원	대상	교육시간
원당골목학교	국어, 수학, 이중언어	25명	다문화가정자녀 및 비다문화가정자녀	매주 토요일 13:00-17:00

(출처: 이민자통합센터)

원당골목학교의 특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대학생 연합기숙사 소속 청년들이 보충수업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국어와 수학을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학습능력 향상 뿐 아니라 공부에 흥미를 갖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자세도 갖게 한다. 이중언어 수업은 결혼이민자들이 자국어어를 가르치게 되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치게 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신의 엄마가 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 수업에 더욱더 집중하게 모습을 보게 된다.

- 교육인원 : 고양시 덕양구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및 비다문화가정자녀 25명
- 추진방법 : 대학생 연합기숙사 소속 청년 및 결혼이민자 강사 선정
- 운영일정 : 매 년 5월-12월
- 교육방법 : 매주 토요일 13:00-17:00 오프라인

## 6. 다문화청년을 위한 일자리 학교

한국어 중급이상의 실력을 가진 이민자들의 전문성을 살린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취업연계가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 이후 많은 이민자들은 보다 진보된 교육 커리큘럼을 찾고 있고 취업과 연계된 교육을 필요로 하지만 욕구를 충족해줄 만한 기관이나 교육 커리큘럼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민자통합센터와 고양시다문화청년네트워크는 고양시와 함께 다문화청년(19세-39세미만)들을 위한 일자리 학교를 준비하여 진행했다.

<표3-1 고양시 일자리학교>

	참여연도	교육내용	참여인원	대상	교육방법
고양시 일자리학교	2020년	의료코디 네이터	20명	다문화청년	이론 및 실습
고양시 일자리학교	2021년	이중언어 지도사	20명	다문화청년	이론 및 실습
고양시 일자리학교	2022년	이중언어 지도사	20명	다문화청년	이론 및 실습

(출처: 이민자통합센터)

### 1) 사업내용

한국어 중급이상의 다문화청년들에게 한국의 노동시장분석을 이해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을 충분히 이해한 후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

고양시 의료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높은 의료기술로 인해 점차 의료관광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의료관광객을 위해 통·번역이 필요한데 이중언어가 가능한 다문화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후 병원에 취업하여 의료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언어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지역사회 이중언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 2022 Multicultural Forum

- 선정인원 : 다문화청년의 자격을 가진 다문화배경을 가진 청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포등 20여명
- 추진방법 : 평일 교육 및 주말 실습
- 교육시간 : 주1회(3-4시간)
- 교육강사 : 해당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 교육방법 : 오프라인 및 온라인교육
- 연계병원 : 지역사회 병의원 및 유치원, 어린이집

### 7. 「세계시민교육」경기도민강사 양성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이민자통합센터는 2018년부터 결혼이민자들의 역량을 살려 경기도 초, 중,고등학교 및 영유아시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이란 국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세계인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 커리큘럼에 이중언어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문화감수성을 높이고 세계시민으로 가져야 할 자세로 갖추 뿐 아니라 이중언어를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다문화가정 자녀 및 비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표4-1 세계시민교육강사 양성과정>

주최	교육내용	참여인원	대상	수요처
경기도	세계시민교육 강사 이중언어 강사	90명	결혼이민자	경기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출처: 이민자통합센터)

- 선정인원 : 경기도 거주 결혼이민자 90여명
- 추진방법 :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24시간), 이중언어 강사 양성(20시간)
- 교육일정 : 매 년 05월-08월
- 교육강사 : 전문강사
- 교육방법 : 오프라인 및 온라인교육
- 파견연계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파견일정 : 매 년 05월-12월

이민자통합센터는 이민자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이민자와 한국인이 서로 하나되어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해 기관 내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민자들이 동참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잘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다.

### 사례발표3

## 전정숙 (평택대학교 교수)







## 다문화아동관련 사례 - 경기도 중심

전경숙 평택대학교 교수

### 중도입국자녀 사례 1

- 평택의 한 마을에 이사 온 베트남 국제결혼 가족이 있었습니다.
- 딸 "A" 씨는 어떤 사람에게 인터넷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즐거워 보였습니다.
- 알아보니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오빠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 오빠는 아직 한국어 초보자이지만 서로 베트남어로 말하다가도 한국어를 사용해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 그 가족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 원 씨는 한국남자와 결혼해 2007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두여동생도 한국남자와 결혼을 시켰고 남동생도 유학생으로 2013년부터 한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원씨는 결혼하기 전, 자신이 다른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고 이혼했던 것을 한국의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생도 한국사람하고 결혼할 때 베트남 남자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막내 여동생만 초혼으로 한국남자와 결혼하고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씨와 여동생들은 다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그들에게 비극이 올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동생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입양해 한국으로 데려오기로했습니다. 남편도 그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아내의 아들을 입양하기로 했지요. 복잡한 입양절차를 거쳐 아이를 데려 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불쌍하게도 아이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동생은 암에 걸려 버렸습니다. 동생은 암에 걸리고 8개월 정도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죽은 후,남은 두아이는 어떻게 해야할지막막했습니다. 양아빠는 "너 때문에 니 엄마는 암에 걸렸다고"하면서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아이를 구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무서웠지만, 이모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아빠와 함께 못 살 것 같다고 이모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기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모들이 온 힘을 다 쓰며 양아빠와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녀인 원씨는 동생들과 여러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결론은 아이를 데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살 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씨는 얼마 전 자신이 과거에 베트남에서 혼인을 했었고, 아이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고, 남편은 그 이야기에 화가 많이 났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인의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동생의 아이까지 데려와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원씨는 '시어머니는 며느

## 2022 Multicultural Forum

리가 과거 혼인 이력을 숨기고 자기 아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 아직 모르고, 남편은 아직도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제부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제부는 자기 아이 두 명으로도 충분하다며 조카의 양육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온가족이 의논한 결과, 아이를 데려와 유학중인 외삼촌과 지내는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의 평택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라서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장녀인 원씨는 남편에게 애원과 부탁을 여러 번 했고 결국 남편도 후견인으로 양육해주겠다고 하면서 조카를 받아들이고 후견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였습니다. 재작년 조카를 데려와 바로 옆집에서 외삼촌과 함께 살게 한 원씨는 남편과 함께 후견인으로써 아이를 돌봐주면서 현재도 평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외삼촌을 비롯한 이모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을 기다려왔고, 그러한 기다림 끝에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한편, 사실 원씨도 결혼할 때부터 본인의 아이를 데려와 한국에서 가족하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어머니는 원씨의 과거에 대해 모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이지요.

원씨가 남편을 계속 설득하여, 남편도 아내의 친아들을 양자로 데려와 양육하는 것은 괜찮지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씨는 친아들의 입양에 대해 아이를 데려와 외삼촌과 옆집에서 살게 하더라도 진행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원씨는 베트남에서 외할머니와 함께사는 친아들을 데려와 함께 사는 것이 본인의 꿈이라고 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아이를 초청하고 한국에 방문하게 해달라고 남편한테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용서하면서 아이를 초청하는 것을 허락해준다고 했습니다.

2022년 8월,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고등학생 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아이가 한국에 오는 것이 너무 좋다고 했지만 아직 양자로 들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애원해도 남편이 본인의 아들을 양자로 받아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원씨의 아이가 한국에 왔지만 어디까지나 방문 동거 신분으로 온 것입니다. 원씨는 남편과 합의를 해 양자로 받아주길 원하지만 남편이 그것을 받아줄지에 대한 막막한 심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본인의 친아들인만큼 입양하고 싶지만 입양절차도 어렵고, 본인도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기혼과 아이가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남편과 용서를 빌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 본인의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오긴 했지만 비자 문제, 동거 문제, 학교 문제 등의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한 번에 감당해야 하다 보니 원씨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남편은 도와주고 싶지 않으면서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내를 용서 해주기로 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현재 원씨는 아들이 한국에 사는 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남편의 용서를 받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해 힘들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중도입국자녀의 문제는 학습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한 문제가 영겨 해결하기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또한 중도입국자녀들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눈치를 보게 되고, 학습 문제 및 생활적응의 문제등이 계속 발생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되고, 이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중도입국자녀들의 문제는 단순한 학습의 문제, 생활적응 문제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부모 가족. 사례2

-안성의 한 마을에 베트남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한 국제결혼가족이 있습니다. - 그 가족은 한국 남자가 초혼인 베트남 여자와 재혼해 아들을 한 명을 낳고 경기도 안성시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이 자주 아프고 병원에 드나들었습니다. 아내는 공장에 다니면서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워 살고 있었죠.

-남편은 일정한 일이 없는 일용직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집이 없었기 때문에 2019년에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가지고 있는 돈과 남편의 돈을 합쳐 5천만원 정도가 있었고, 거기에 1억을 대출받아 1억 5천만원의 집을 샀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은 암 때문에 죽고,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돌아가기전에 모른 더 많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 집때문에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을 받아오니까 남편한테 2명의 또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1.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낳은 23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 한 명과

2. 중국아내와 결혼하고 낳은 중학교 아들 한 명

그래서 남편은 3번 결혼하고 낳은 자녀 총 3명으로 알게 됩니다.

- 베트남 결혼이민자는 가족들과 알아보니 한국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중국 여성한명하고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동안 중국여성이 아이를 한 명을 낳았지만 남편의 아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낳은 아이이며 그냥 돈을 주고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렸습니다.

- 그리고 빚은 1 억외대출이 금고 마을 은행, 신용대출, 등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 하고 1억을 갓고집을 가지고 싶어도 가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상속받고 싶으면 남편의 자녀 2명의 재산포기 각서를 받고 오라고 했습니다.

## 2022 Multicultural Forum

+ 한국여성과 결혼하고 낳은 딸에게 가서 재산포기 각서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써주었지만

+ 중국여성과 결혼하고 낳은 아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보를 알지 못 하고 한번도 만나지 못 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정보 도 없습니다.

-장례식을 하는 동안 아들이 계속 "언제 집에 가냐?"엄마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 엄마는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부터 살아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아이는 아빠가 돌아갔는 것에 대해 아직 인식하지 못 하고 남은 재산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 것도 모르니까 걱정은 태산입니다.

-아빠가 사는 동안 쓰레기를 줍고 판매하는 사람이어서 집은 완전 쓰레기 터이고 너무 더럽습니다.

-그 환경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아이가 말이 없고 다른 친구들과 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사는 환경도 너무 빈약하고 한국어도 잘 하지 못하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남은 숙제입니다.

다문화 자료1

# 다문화 관련법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다문화 관련법

## 다문화 관련법의 종류

1. 국적법
2. 출입국관리법
3.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 )
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약칭: 외국인처우법 )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결혼중개업법 )
7. 난민법

## 법 체계

법(국회/대통령/국민)-시행령(대통령)-시행규칙(장관)  
행정조례(장관)-자치조례(광역/기초지자체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204호, 2017. 12. 12., 일부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8. 6. 13.] [대통령령 제28939호, 2018. 6. 5., 일  
부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 12.  
27. 타법개정]

## 1. 국적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7호, 2016.12.2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 [전문개정 2008. 3. 1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 2022 Multicultural Forum

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인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인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 12. 19.>
-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08. 3. 14.]

[시행일 : 2018. 12. 20.] 제4조

## 2. 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 2017.12.12.] [법률 제15159호, 2017.12.1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장 총칙 <개정 2010. 5. 1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



(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2018. 3. 20.>

[전문개정 2010. 5. 14.]

[시행일 : 2018. 9. 21.]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0., 2014. 3. 18.>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 3.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

[시행 2014. 1. 1.] [법률 제12079호, 2013. 8. 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2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2. 1.>

## 2022 Multicultural Forum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4.]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4.]

##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약칭: 외국인처우법 )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74호, 2010. 7. 23.,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자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2 Multicultural Forum

다.

제7조(업무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51

제1장 총칙 <개정 2009. 10. 9.>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10. 9.]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 10. 9.]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

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10. 9.]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0. 6. 4., 2013. 3. 23., 2017. 7. 26.>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개정 2009. 10. 9.>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0. 9.]

## 2022 Multicultural Forum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4. 1. 28.>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전문개정 2009. 10. 9.]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2022 Multicultural Forum

-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⑤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결혼중개업법 )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1호, 2018. 1. 16.,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02-2100-6376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0. 5. 17.>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 7. 난민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2016. 12. 20., 일부개정]  
법무부(난민과), 02-2110-4160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 2022 Multicultural Forum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③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난민인정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비치 및 게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①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18.>

④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 2022 Multicultural Forum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 : 다문화 시대와 한국의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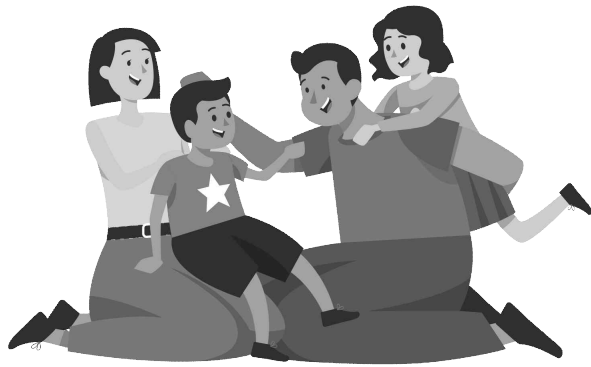
저자 박성혁, 김자영, 배화순, 이수진|집문당 |2016.12.30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들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고, 현행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구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고민을 경험한 해외 주요국의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다문화 자료2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소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연혁

06. 08	○ 다문화가족센터 설립
09	○ Pyeongtaek International Day 2006 개최
10	○ 다문화가족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다문화가족센터 / 가족사회복지학회 공동 워크숍
11	○ 다문화가족센터 개소기념 세미나
	○ 가족사회복지학회/다문화가족센터 공동 학술대회
	○ 외국인근로자지원 학술세미나 개최
07. 01	○ 다문화 실습 및 제1차 전국 다문화 국내기관연수 및 해외연수
	○ 다문화 전공생 해외연수(일본, 베트남, 필리핀)
03	○ 다문화가족센터 춘계학술대회 개최
	○ 외국대사 및 전문가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04	○ 다문화 교재, 매뉴얼, 교과목지침서, 「다문화가족연구」 등 학술지 20종 발간
05	○ 보건복지부, 2007년 「결혼이민자 생활안내」 발간
06	○ 평택시청,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진행
07	○ 교육인적자원부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제2주기 선정
08	○ 다문화가족센터/충남여성정책개발원/현대민족학회 학술대회.연구협약체결
10	○ 평택시 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축제 개최
	○ 경기여성전문네트워크 정책포럼.다문화가족센터 학술세미나 개최
11	○ 평택시 다문화관계자 초청간담회
12	○ 다문화실습 초청 간담회
	○ 다문화 해외연수 발대식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 다문화 UCC 제1기 교육 및 연수
08. 01	○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제2차 전국 다문화 국내기관연수 및 해외연수
	○ 다문화 해외기관 연수(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사 1급 특강
02	○ 이중언어 통역사 교육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04	○ 다문화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2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다문화가족센터/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 공동워크샵
	○ 「다문화체험 및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사업」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다문화 예술심리치료 워크샵
	○ 다문화 전문가 자격제도 개발 워크샵
	○ 다문화 연계전공 설명회 및 동아리 축제(해단식)

## 2022 Multicultural For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팀티칭 시범강좌 실시</li> <li>○ &lt;4Cs운동 : 아시아 영화제&gt;</li> <li>○ 이중언어 통역사 프로그램 실시</li> <li>○ 다문화 가족상담 및 치료 연수</li> <li>○ 문화적 역량과 사회복지실천 워크샵</li> <li>○ 한국어 및 문화교육 체계화의 교과과정 위원회</li> <li>○ 학술지「다문화가족연구」제2집 발간</li> <li>○ 교내 국내 세미나</li> </ul>
08.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핑택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경기도 지원)</li> <li>○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과 지역네트워크 구축전략 세미나</li> </ul>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회 다문화가족사랑 걷기모금축제</li> <li>○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콜로키움 개최</li> <li>○ 다문화 UCC 제2기 교육 및 연수</li> <li>○ 사회복지 및 다문화 실습 교육</li> <li>○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도서관 견학</li> <li>○ 제1차 콜로키움 개최</li> </ul>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 사전정보 제공 프로그램」여성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 지원</li> <li>○ 다문화 관련 국내 인턴쉽 활동비 지원 프로그램</li> <li>○ Working volunteer 파견 프로그램 (몽골, 베트남)</li> </ul>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언어자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과정</li> <li>○ 인터그룹 다이얼로그 실시</li> <li>○ 다문화 관련 도서 및 영상자료를 통한 스터디 그룹</li> </ul>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와 아동보호」 제2차 콜로키움 개최</li> <li>○ 경기도 외국인지원 관계자 연찬회, 「다문화사회의 외국인정책과 지역 간 협력방안 모색」경기도 지원</li> <li>○ 다문화 사회통합 ABT(Active Brain Tower)대학 선정</li> <li>○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전통놀이 축제 한마당”</li> <li>○ 경기도 외국인 지원 관계자 연찬회 개최</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제2차 콜로키움 개최</li> <li>○ 1차 외국인 유학생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li> <li>○ 다문화가족과 현실치료 이론과 기법 워크샵</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팀티칭 시범강좌 실시</li> <li>○ 한국의 외국인 인권 워크샵</li> <li>○ 목회자 및 다문화기관 실무자 워크샵</li> <li>○ 모자이크 바자회 개최</li> <li>○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제3차 콜로키움 개최</li> </ul>



0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교육관 개관</li> <li>○ 다문화 해외연수 발대식 및 사전 교육</li> <li>○ (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의 공동 세미나 &lt;다문화 사회와 사회복지 교육의 역할&gt; 개최</li> <li>○ 다문화 가족복지 자격연수 과정</li> <li>○ 다문화 국내 기관 연수 실습 워크샵</li> <li>○ 다문화 동계 워크샵(석.박사 과정)</li> <li>○ 제2차 문화적 민감성 훈련 프로그램</li> <li>○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li> <li>○ 다문화 이해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li> </ul>
09.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사 1급 대비 특강</li> <li>○ 다문화 기관 및 문화원 방문 프로그램</li> <li>○ 제3차 지정기관 집중 국내기관연수</li> </ul>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복지실습</li> <li>○ 한국행정학회.아시아행정포럼.다문화가족센터 공동 학술세미나</li> </ul>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경기도 소식지 Happy family 창간호 발간</li> </ul>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평택시 외국인주민 지원 실무자 워크숍</li> <li>○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과정</li> </ul>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평택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개강식</li> </ul>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언어자 통역사 교육 실시</li> <li>○ 2009 전국 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 대회 실시</li> </ul>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하계 워크숍 실시</li> </ul>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전문상담원 양성 과정 실시</li> <li>○ 한국어교실 추석음식 문화체험 실시</li> <li>○ 평택시 움직이는 다문화School 다문화강사 양성 및 파견사업 실시</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다문화교육 평가 세미나</li> <li>○ 한국다문화가족학회 창립 학술대회 및 이주여성 책자 출판기념행사 개최</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교육청 다문화교육매체 제작(다문화송, 세계의 전통 음식과 놀이)</li> <li>○ 경기북부다문화교육센터 "알기 쉬운 다문화교재" 개발</li> </ul>
10.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시 움직이는 다문화School 다문화강사 제1차 보수교육 실시</li> </ul>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 평택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개강식</li> <li>○ 비전중학교 자원봉사 관련 협약 체결</li> </ul>
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행복 투게더' 다문화강사 파견</li> <li>○ 평택시 움직이는 다문화School 다문화강사 제2차 보수교육 실시</li> </ul>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시 교육청 협약체결/ 육군군종실 협약체결</li> </ul>

## 2022 Multicultural Forum

10. 06	○ 다문화공연단(인형극, 연극) 양성 및 발표회
09	○ 지역주민 다문화한마당 축제
10	○ 경기도 다문화가정 부부 워크숍(2회)/ 육군 군종장교 워크숍
11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과정 진행/ 2급 보수과정 진행
12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과정
11. 01	○ 법무부, 사회통합운영기관 선정 및 프로그램 실시
02	○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과정 선정
03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경기도 소식지 Happy Family 3차년도 선정
04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2급 교육
06	○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 일반과정 실시
07	○ 다문화 가정 컴퓨터 교육(KT지원)
08	○ 경기도 다문화가정 부부 워크숍(2회)
09	○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가
	○ 국가 인권 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구축 공동연구 참여
10	○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 보수과정 개최
11	○ 학부모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12	○ '중도입국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한 아름다운 밤' 개최
	○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 고급과정 실시
12. 01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 전문가 2급 보수교육
02	○ 다문화가족센터 동계 워크숍
	○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 평가회 실시
	○ 다문화상담실 운영(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 201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선정(법무부)
03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평택 Rainbow School 선정(여성가족부)
	○ 「디딤돌스쿨」 개교/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
04	○ 2012 경기도 다문화가족소식지 'happy family' 발행(경기도)
05	○ 2012 다문화가정 부부워크숍 개최(경기도)
06	○ 2012 다문화·탈북학생 가정 멘토링사업 선정(교육부)
	○ 다문화교육관 인식개선교육 실시(평택지역 유치원, 초, 중학교)
07	○ 평택 Rainbow School 여름학교 선정(여성가족부)
08	○ 평택 Rainbow School 하반기사업 선정(여성가족부)
09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 실시(육군본부 군종실)
10	○ 다문화청소년 과학문화 민간활동지원사업 선정(한국과학창의재단)
12	○ 디딤돌스쿨 수료식 및 운영보고회
13. 01	○ 다문화상담실 운영(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선정(법무부)/평택 Rainbow School 겨울학교

13. 03	○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평택 Rainbow School 선정(여성가족부)
04	○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 경기도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선정(경기도)
05	○ 과학문화 민간활동 지원사업(한국과학창의재단)
	○ 인천지방법원 '다문화가정부부캠프' 실시(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06	○ 이주여성 '희망날개 합창단' 창단(한국여성재단)
07	○ 평택 Rainbow School 여름학교 운영(여성가족부)
08	○ 평택 Rainbow School 하반기 운영(여성가족부)
09	○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지원프로그램 '너의꿈을 잡아라'(외환은행나눔재단)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 실시(육군본부 군종실)
11	○ 다문화사회 전문가 강사 대상 보수교육 실시(법무부)
12	○ 디딤돌스쿨 수료식 및 운영보고회
14. 01	○ 다문화교육관 사업다문화인식개선교육 실시(평택시 초, 중학교)
	○ 평택 Rainbow School 겨울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03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평택 Rainbow School 선정(여성가족부)
07	○ 평택 Rainbow School 여름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양성과정 실시(법무부)
08	○ 평택 Rainbow School 하반기 운영(여성가족부)
09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육군본부 군종실)
11	○ 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 대상 보수교육(법무부)
12	○ 디딤돌스쿨 졸업식 및 운영보고회
	○ 무지개청소년센터 평택레인보우스쿨 최우수기관 선정(여성가족부)
15. 01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평택 Rainbow School 겨울학교 운영(여성가족부)
02	○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 선정(법무부)
03	○ 디딤돌스쿨 입학식(평택 Rainbow School 여성가족부)
	○ 다문화교육사업 실시
04	○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북한이탈주민 세미나 개최
06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08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 실시(육군본부 군종실)
	○ 다문화청소년 멘토링 캠프(경기도)
10	○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 시행
	○ "다문화와 동행" 다문화학술세미나 개최
16. 01	○ 평택 Rainbow School 겨울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2022 Multicultural Forum

16. 02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법무부)
03	○ 평택 Rainbow School 상반기 운영(여성가족부)
	○ 다문화교육사업 실시
04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평택시)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2016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
08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 실시(육군본부 군종실)
09	○ 다문화가족센터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12	○ 다문화가족센터 워크숍 진행
17. 01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법무부)
02	○ 평택 Rainbow School 상반기 운영(여성가족부)
04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지원프로그램 ; 무지개JOB아라' 운영
	○ 2017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
06	○ 다문화 이해 ·인성 강사양성 과정 연수(안성교육지원청)
07	○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지원프로그램 ; 내-일을 JOB아라' 운영
08	○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사업; 사전프로그램 운영(1박2일)
	○ 평택 Rainbow School 하반기 운영(여성가족부)
09	○ 2017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사업; 현지프로그램 운영(9박10일)
	○ 다문화가족센터 학술세미나 개최
18. 01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법무부)
03	○ 2018년 레인보우 스쿨 운영(여성가족부)
	○ 2018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운영(한국장학재단)
	○ 2018년도 평택시양성펀드기금 지원사업(다문화교육전문가 양성과정)진행(평택시)
04	○ 2018년도 다문화바자회 및 다문화체험 부스 운영
	○ 2018년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사업 진행(여성가족부)
	○ 2018년도 다문화 서포터즈 사업 운영
09	○ 2018 중도입국청소년 체력증진 프로그램 '레인보우UP!' 사업 진행(여성가족부)
19. 01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법무부)
02	○ 2019년 레인보우스쿨 운영(여성가족부)
03	○ 2019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운영(한국장학재단)
	○ 2019년도 평택시양성펀드기금 지원사업(다문화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진행(평택시)
	○ 2019년도 이주배경청소년 멘토링 위탁운영(여성가족부)
04	○ 2019년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사업 진행(여성가족부)
05	○ 2019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농어촌 특별활동 운영
	○ 문화활동지원사업 '꿈보다 해몽' 사업 진행

11	○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선진화 추진을 위한 국외연수 참석
20. 01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법무부)
02	○ 다문화 워크숍 개최
03	○ 2020년도 이주배경청소년 멘토링 사업 운영
	○ 2020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운영(한국장학재단)
	○ 2020년도 다문화융복합전공 학과 다문화사회전문가 현장실습 운영
05	○ 2020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농어촌 특별활동 운영
	○ 2020년 레인보우스쿨 운영(여성가족부)
06	○ 2020년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사업 진행(여성가족부)
09	○ 2020년도 평택시양성펀드기금 지원사업(다문화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진행(평택시)
12	○ 2020년도 레인보우스쿨 및 진로지원프로그램 최우수 운영기관 선정
21. 01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법무부)
	○ 2021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농어촌 특별활동 운영(1차)
03	○ 2021년 레인보우스쿨 운영(여성가족부)
04	○ 2021년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사업(무지개 잡아라) 진행(여성가족부)
	○ 2021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운영(한국장학재단)
	○ 2021년도 다문화융복합전공 학과 다문화사회전문가 현장실습 운영
08	○ 2021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농어촌 특별활동 운영(2차)
09	○ 2021년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사업(내일을 잡아라) 진행(여성가족부)
22. 01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법무부)
03	○ 2022년 다문화융복합전공 학과 다문화사회전문가 현장실습 운영
	○ 2022년 레인보우스쿨 운영(여성가족부)
	○ 2022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운영(한국장학재단)
04	○ 2022년 다문화서포터즈 운영
	○ 2022년 평택시청소년참여예산제 다문화대안학교 참여
08	○ 2022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농어촌 특별활동 운영(1차)
10	○ 2022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농어촌 특별활동 운영(2차)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미래사회와 문화다양성' 다문화포럼 개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소장 유진이 교수)는 11월 18일(금) 오후 2시-4시 평택대 제2피어선빌딩 6층 연회장에서 '미래사회와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다문화포럼을 개최한다.

다문화포럼은 평택대학교 이동현 총장직무대행의 환영사, 평택시 정장선 시장의 격려사와 유의동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평택대다문화대안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과 홍영균 회장((사)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김영순(인하대교수/다문화융합연구소장), 송원일(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 연구교수), 이정금(순천대 교수) 등이 미래사회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주제강연을 그리고 김재석(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 김세영(고양이민자통합센터장), 전정숙(평택대학교 교수) 등의 사례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소장이자 평택대학교 국제교류협력원 원장인 유진이 교수는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그동안 다문화 교육을 위한 많은 연구와 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K-다문화의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며 포럼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포럼에는 다문화 관련 연구자와 평택 인근 지역의 다문화 활동가, 교육청 및 시청 공무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문화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031-659-8198~8200)로 직접 문의하거나 센터 홈페이지(<https://mfcf.ptu.ac.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2022 다문화포럼 “미래사회와 문화다양성”

발행일 2022년 11월 18일

발행기관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발행인 유진이

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107호

이메일 [mcfc@ptu.ac.kr](mailto:mcfc@ptu.ac.kr)

전화 031-659-8198~8200

팩스 031-659-8197

홈페이지 <https://mcfc.ptu.ac.kr>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